

2026년 학교체육 기본 계획



경상남도교육청
(체육예술건강과)

목 차

I. 경남교육 정책 방향

II. 학교체육 운영 기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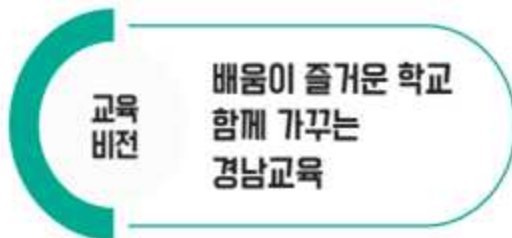
1. 2025년 학교체육 주요성과 / 5
2. 2026년 학교체육 활성화 추진 배경 / 7
3. 학교체육 기본방향 / 8

III. 중점과제 추진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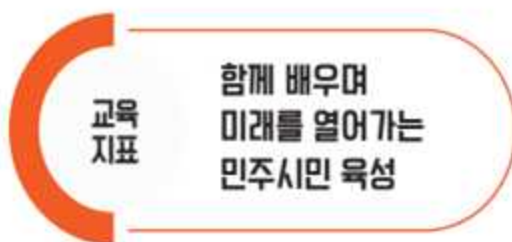
1. 학교체육교육 운영 내실화 / 13
2.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 / 32
3. 선진형 중점학교스포츠클럽(학교운동부) 운영 / 42
4. 학교체육 활성화 협업체계 구축 / 70

|

경남교육 정책 방향



학교가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존중하여 더불어 성장할 수 있는 행복한 배움터가 되고, 민주적인 학교문화 조성으로 교사와 학생이 배움을 통해 함께 역량을 키워가는 공동체가 되며, 소통과 공감으로 교육공동체가 협력하여 학생의 내일을 열어가는 시공간이 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경남교육은 개개인의 다양한 성장을 돕는 학습자 맞춤형 교육에 더욱 내실을 기하면서 공간혁신을 통한 참여와 협력의 마을교육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이를 통한 교육생태계 확장으로 미래교육을 향한 더 큰 걸음을 내딛고자 합니다.



II

학교체육 운영 기저

1

2025년 학교체육 주요성과

2

2026년 학교체육 활성화 추진 배경

3

학교체육 기본방향

1. 모두가 참여하는 학교체육 활성화

- (체육교육 전문인력 지원) 체육전담교사,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217명, 중학교 학교스포츠클럽 강사 200교
- (학교체육 활성화 우수학교 지원) 초 7교, 중 8교, 고 7교 / 총 16교
- (학교체육 공모사업 운영)

영역 \ 급	초	중	고	계
수준별 교내 학교스포츠클럽 리그	15교	30교	25교	70교
우수학교스포츠클럽	171클럽	146클럽	93클럽	410클럽
건강체력교실 중점 운영	50교	34교	34교	118교

- (학교체육 연구대회 운영)

구분	연구논문분과	수업사례분과
경남	2등급 1명 / 3등급 1명	3등급 1명

- (컨설팅) 학교체육교육 컨설팅(총 13교), 학교체육 진흥 조치 점검 및 컨설팅(전 학교 / 연 1회)

2. 학생 중심의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

- (학교스포츠클럽 운영비 지원) 학생 수에 따라 통합사업운영비(교당 700~4,900천원)로 지원, 각종 대회 출전 경비와 교내리그 운영 등에 사용
- (학교스포츠클럽 축전(대회) 참가 현황)

(단위: 명)

제19회 교육감배 학교스포츠클럽 대회				제18회 전국학교스포츠클럽 축전			
초	중	고	전체	초	중	고	전체
3,599	3,892	2,646	10,137	440	438	314	1,192

3. 학생선수 보호 및 체육대회 운영 지원

- (선진형 학교운동부 운영) 초·중학교 ‘학교운동부’를 ‘중점학교스포츠클럽(학생선수반+학생취미반)’으로 전환 운영, 중점학교스포츠클럽(학교운동부) 육성 지원금 지원(연 2회), 중점학교스포츠클럽(학교운동부) 현장 점검(4~9월), 축구·야구 종목(초·중 28개) 지역형스포츠클럽 운영 지원, 전국(소년·동계)체육대회 대비 훈련비·장비비·출전경비 지원, 동계훈련비 지원
- (학생선수 저변 확대 및 조기 발굴) 초중학생종합체육대회 육상 종목 지원 예선 폐지, 교육감배 학교스포츠클럽 대회 참가 클럽 확대(창원·마산·진주·김해 지역대표 세부 종목별 2개 클럽 선발, 교육지원청 단위 리그에 8개 클럽 이상 참가한 종목 및 종별은 상위 2개 클럽 선발), 중점학교스포츠클럽 학생취미반 스포츠크럽 운영 지원(87교, 1,372명)
- (공부하는 학생선수 육성(학습권 보장)) 수업결손 보충을 위한 ‘학생선수 e-School 운영’ 등을 통해 최저학력 미도달 학생 비율 감소, 학생선수 학력 레벨업 사업 운영 지원(84교, 629명)
- (2025. 경남초중학생종합체육대회) 11월, 밀양시 일원, 초 2,732명, 중 2,011명 / 총 4,743명
- (제54회 전국소년체육대회) 5월, 경상남도 일원(주 개최지: 김해), 금47 · 은47 · 동41 획득
- (제106회 전국체육대회) 10월, 부산광역시 일원, 금13 · 은27 · 동32 획득
- (우수선수지도실적평정대회)

구 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계
평정대회 참가 명단 제출자		128명	120명	51명	299명
명단 제출자 중 보고서 제출자		75명	58명	20명	153명
실적 등급	1등급	28명	28명	9명	65명
	2등급	21명	13명	7명	41명
	3등급	26명	17명	4명	47명

1. 학생건강체력 증진을 위한 다양한 체육활동 제공 필요

- 코로나19로 신체활동 위축에 따른 운동량 회복 등 노력 중이나, 저체력 학생 비율의 회복을 위한 체계적인 신체활동 참여기회 확대 필요
- 우리나라 ‘청소년(11~17세) 권장 운동량 충족 비율’이 낮은 수준이며, 학생 체력 증진과 신체활동 확대를 위한 학교체육 강화 필요성 제기

2. 신체활동 참여기회 확대를 위한 학교스포츠클럽의 다양화 필요

- 학생의 신체활동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다양한 유형(교육과정 내·외, 학교·거점(마을) 단위 등) 및 수준의 학교스포츠클럽 지원 마련 필요

3. 학생선수 성장 중심 학교운동부 운영 등 지원 체계화 요구

- 학생선수 훈련·출전에 따른 학습권 보장, 인권침해 및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 제기로 안전한 환경 조성 등 체계적인 지원 필요

4. 학교체육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현장 중심 지원 필요

- 맞춤형 신체활동, 학교스포츠클럽 다양화, 학생선수 인권침해 예방·대응 및 학습권 보장·진로 지원 등을 위해 교육(지원)청과 학교 현장 연계 체제 강화 필요

☞ 몸과 마음이 건강한 학생, 활기찬 학교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신체활동 기회 확대와 학생선수 지원 등 학교체육 활성화 추진

운동하는 모든 학생, 진로를 가꾸는 학생선수

모든 학생의 신체활동 참여 기회 확대
자기 주도적으로 운동하고 공부하는 학생선수

중점과제 1

학교체육교육
운영 내실화

1. 학교체육교육
질 향상

1. 체육수업 내실화
2. 교원 및 체육지도자 전문역량 강화

2. 교육과정 내
체육프로그램
내실화

1. 초등 생존수영 교육 지원
2. 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
3. 미세먼지 대비 실내체육 프로그램 마련

3. 건강체력 증진
프로그램 운영
강화

1. 학생건강체력평가제(PAPS) 운영 내실화
2. 건강체력교실 운영 내실화
3. 온·오프라인 신체활동 참여기회 확대

중점과제 2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

1. 학교 단위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1.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의무화
2. 학교 단위 학교스포츠클럽 리그 활성화

2. 교육청 단위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1. 교육지원청 단위 학교스포츠클럽 리그 활성화
2. 도 단위 및 전국 단위 학교스포츠클럽 대회 지원

중점과제 3

선진형
중점학교스포츠클럽
(학교운동부)
운영

1. 선진형
중점학교스포츠클럽
(학교운동부) 육성

1. 강남형 학교운동부 육성 모형
2. 중점학교스포츠클럽 운영
3. 지역형스포츠클럽 운영

2. 학생선수 맞춤
중점학교스포츠클럽
(학교운동부)
운영

1.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진로교육 강화
2. 학생선수 인권 보호 및 학교운동부지도자 관리 강화
3. 중점학교스포츠클럽(학교운동부) 운영 투명화
4. 교육적인 중점학교스포츠클럽(학교운동부) 운영 지원

중점과제 4

학교체육 활성화
협업체계 구축

1. 학교체육
거버넌스 및 지원
체계 구축·운영

1. 학교체육 통합 거버넌스 구축
2. 학교체육교육 지원체계 운영 활성화

2. 학교체육 연구
활동 지원

1. 우수선수 지도실적 평정대회 및 유공자 포상
2. 학교체육 연구대회 운영
3. 학교체육 활성화 방안 추진 우수학교 선정 지원
4. 학교체육교육 중요성 인식 제고

III

중점과제 추진계획

1

학교체육교육 운영 내실화

2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

3

선진형 중점학교스포츠클럽(학교운동부) 운영

4

학교체육 활성화 협업체계 구축

도-도교육청

지-교육지원청

학-학교

구분	체 육 교 육	학 교 스 포 츠 클 럽	중 점 학 교 스 포 츠 클 럽 (학 교 운 동 부)
2월	- 학교체육 기본 계획 안내 - 학교체육 진흥 추진 지원팀 운영 - 체육시설 및 교구 안전 점검(4일)	-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매뉴얼 안내 - 중학교 학교스포츠클럽 강사 지원 - 중학교 학교스포츠클럽 강사 채용	- 제107회 전국동계체육대회 - 중점학교스포츠클럽(학교운동부) 연간 운영 계획 수립 및 심의(학교운영위원회) - 우수선수 지도실적 평정대회 지도 교원 명단 제출(전국동계체전) - 동계(전지) 훈련 실시 - 전국소년체육대회 경남대표 선발전(~4월)
3월	- 학교체육 공모사업(우수학교스포츠클럽) 운영학교 선정 - 학교체육소위원회 구성·운영 - 여학생 체육활성화 운영 계획 수립·운영 - 학생건강체력평가제(PAPS) 계획 수립 - 학교체육 공모사업 운영(연중) - 체육시설 및 교구 안전 점검(4일)	- 학교스포츠클럽 연간 운영 계획 수립(학교 체육소위원회 심의 및 학교장 내부결재) - 학교스포츠클럽 나이스 등록(1인 1클럽 이상/등록률 100% 이상) - 학교스포츠클럽 운영(연중) - 중학교 학교스포츠클럽 강사 연수	- 중점학교스포츠클럽(학교운동부) 운영 길라잡이 안내 - 학생선수 현황 제출(전 학생선수) - 우수선수 지도실적 평정대회 보고서 제출(전국동계체전) - 추천체육특기자 심의 - e-School 운영 계획 수립
4월	- 학교체육연구대회 계획서 제출 - 학교체육교육 컨설팅(연중) - 학생건강체력평가제(PAPS) 운영 - 건강체력교실 운영(연중) - 초등수영 실기(4~12월) - 체육시설 및 교구 안전 점검(4일)	- 교육감배 학교스포츠클럽 대회 운영 계획 수립 및 안내 - 지원청 단위 학교스포츠클럽 리그 운영 계획 수립 - 교내 학교스포츠클럽 리그 운영(수준별 권장) - 중학교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현황 제출	- 학교체육 공모사업 (학생취미반 스포츠 캠프, 학생선수 학력 레벨업) 운영학교 선정 - 우수선수 지도실적 평정대회 지도 교원 명단 제출(전국체전, 전국소년체전) - 학교운동부지도자 연수(도교육청 주관) - 학생선수 학부모 각종 교육 및 연수(1학기) - e-School 운영 신청
5월	- 학교체육 공모사업(건강체력교실 중점) 운영학교 선정 - 체육시설 및 교구 안전 점검(4일)	-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현장 점검 - 지원청 단위 학교스포츠클럽 리그 운영 - 교내 학교스포츠클럽 리그 운영(수준별 권장)	- 제55회 전국소년체육대회(부산) - 제107회 전국체육대회 선발전(5~8월)
6월	- 학교체육 공모사업 운영 컨설팅 - 체육시설 및 교구 안전 점검(4일)	-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현장 점검 - 중학교 학교스포츠클럽 강사 인건비 중간 정산 - 지원청 단위 학교스포츠클럽 리그 운영	- 우수선수 지도실적 평정대회보고서 제출(전국체) - 추천체육특기자 심의
7월	- 학교체육 공모사업 운영 컨설팅 - 체육 시설 및 교구 안전 점검(4일)	- 지원청 단위 학교스포츠클럽 리그 운영 - 교육감배 학교스포츠클럽 대회 참가 신청	- 상반기 중점학교스포츠클럽 (학교운동부) 운영 점검 - e-School Run-up 등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 운영
8월	체육시설 및 교구 안전 점검(4일)		- 학생선수 학부모 각종 교육 및 연수(2학기) - e-School Run-up 등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 운영
9월	- 학교체육연구대회 보고서 제출 - 체육시설 및 교구 안전 점검(4일)	- 제20회 교육감배 학교스포츠클럽 대회 - 교내 학교스포츠클럽 리그 운영(수준별 권장)	- 추천체육특기자 심의 - 학교운동부지도자 연수(교육지원청 주관)
10월	- 학교체육활성화 방안 추진 우수학교 선정 - 학교체육 진흥 조치 점검 - 전국학교체육연구대회 보고서 제출 - 체육시설 및 교구 안전 점검(4일)	- 지원청 단위 학교스포츠클럽 리그 운영 - 교내 학교스포츠클럽 리그 운영(수준별 권장) - 제19회 전국 학교스포츠클럽 축전 참가	- 제107회 전국체육대회(제주) - 고입 체육특기자 원서접수
11월	- 학교체육 진흥 조치 컨설팅 - 학생건강체력평가제(PAPS) 마감·전송 - 체육 시설 및 교구 안전 점검(4일)	- 전국 학교스포츠클럽 축전 운영(스포츠스태킹) - 지원청 단위 학교스포츠클럽 리그 운영 - 교내 학교스포츠클럽 리그 운영(수준별 권장)	- 경남 초·중학생 종합 체육대회 - 학교운동부지도자 전보 서류 제출 - 우수선수 지도실적 평정대회 보고서 제출(전국체전) - 고입 체육특기자 선발 심의
12월	- 학교체육활성화 우수학교 및 유공자 표창 - 학교체육 성과보고회 - 체육시설 및 교구 안전 점검(4일)	- 중학교 학교스포츠클럽 강사 인건비 정산 -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실적 나이스 등록 마감	- 동계(전지)훈련 계획 수립 - e-School Run-up 등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 운영
27년 1월	체육시설 및 교구 안전 점검(4일)		- 하반기 중점학교스포츠클럽 (학교운동부) 운영 점검 - e-School Run-up 등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 운영
2월	체육시설 및 교구 안전 점검(4일)		108회 전국동계체육대회 - 제56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선발전(2~3월) - e-School Run-up 등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 운영

● 관련 근거

- 학교체육 진흥법,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령,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규칙
- 경상남도 초등학교 교육과정(경상남도교육청 고시 제2025-24호)
- 경상남도 중학교 교육과정(경상남도교육청 고시 제2025-25호)
- 경상남도 고등학교 교육과정(경상남도교육청 고시 제2025-26호)
- 제3차 학교체육진흥 기본 계획(2024.1.5.)
- 2026년 학교체육 활성화 시행계획(교육부 민주시민교육과, 2026.2.)

● 추진 계획 및 개요

추진 사업	목표	추진시기	대상(주관)
초등(특수)학교 스포츠강사 배치	214명	3월~2027.2월	도교육청, 교육지원청, 초등(특수)학교
중학교 학교스포츠클럽 강사 지원	280명	3월~2027.2월	도교육청, 교육지원청, 중학교
중학교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현황 취합	1회	4월	중학교→교육지원청, 도교육청
초등생존수영교육 지원	연중	3월~12월	도교육청, 교육지원청, 초등학교
여학생체육활동 활성화	연중	3월~2027.2월	전 학교
학생건강체력증진 활동 지원	연중	3월~2027.2월	전 학교
PAPS 측정·입력·마감 →교육청 전송	1회	11월	전 학교(반드시 전송 완료)
학교체육 활성화 성과보고회	1회	12월	도교육청, 교육지원청, 전 학교

● 기관별 역할

교육지원청	단위 학교
• 체육과 교육과정 정상 운영 점검 • 연수를 통한 체육수업 중요성 인식 확산 • 초등학교 수영실기교육 운영·점검 • 초등(특수)학교 스포츠강사 배치, 관리 • 학교체육 연구대회 지원	• 체육과 연간 계획 수립 및 학교교육과정 반영 • 스포츠강사 운영 및 관리 • 학교체육 활성화 계획 수립 추진 • 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 계획 수립 추진 • 학생 건강체력 증진 프로그램 운영 계획 수립 추진 • 학교체육 연구대회 참여 확대

1-1

학교체육교육 질 향상

● 목적 및 기본방침

- 체육과 교육과정 정상적 운영
- 단위학교의 특성에 맞는 체육교과 교육과정 운영
- 산재되어 있는 체육수업 자료 가공·활용의 극대화
- 체육교과 기준수업 시수 준수 및 균형 있는 체육수업 전개
- 체육수업을 타 교과나 자습시간으로 대체하는 등 파행 운영 금지
- 학생의 흥미와 요구에 부합하는 수업·평가방법 개선으로 체육수업의 질 제고
- 초등학교의 체육수업 부담 경감 및 학생들의 체육수업 흥미 유발을 통한 학교체육 활성화 도모
- 학생들이 체육활동의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평생 운동습관 형성에 기여

1-1-1

체육수업 내실화

1. 체육과 교육과정 내실 운영

가. 교육과정 운영

1) 2022 개정 교육과정 적용



2) 체육과 교육과정 편성과 실제 학교수업 운영이 다르지 않도록 체육수업 컨설팅, 현장 점검 및 지원 강화

※ 초등(3~6학년) : 주당 3시간, 중학교 : 272시간, 고등학교 : 10단위 이상, 매 학기(6학기) 편성

3) 기존 「즐거운 생활」에서 분리·신설 예정인 초등 1, 2학년 「건강한 생활」 현장 안착 지원

- 교과용 도서 등 개발과 함께, 교원 연수 확대, 간이 체육실 등 시설 개선

※ 국가교육과정 일부 개정 고시(국가교육위원회, '26.3월) → '28년 3월 적용

4) 중학교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은 창의적 체험활동의 동아리 활동으로 매 학기 편성하며, 학년별 연간 34~68시간(총 136시간) 운영

- 중학교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종목 및 반 개설 시 학생 수요 조사를 통해 선호(희망) 종목을 반영한 다양한 종목 개설
- 단위 학교의 여건과 학생 특성을 반영하여 신체활동 참여기회 확대를 위한 다양한 활동 종목을 개설·운영

- 지역 체육시설과 연계하여 다양한 스포츠 체험 및 경기관람 등을 포함한 신체활동 참여 기회를 학생들에게 제공

5) 고등학교는 교육과정에 체육 10단위 이상, 매 학기(6학기) 편성

※ 특성화 고등학교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는 8단위 이상 편성 운영

나. 다양·체계·안전·맞춤형 체육수업 운영

- 1) (다양) 학교 여건에 맞는 다양한 체육수업 운영으로 학생의 건강 증진 및 체력 향상과 신체활동 극대화를 통한 건강한 미래인재 양성
- 2) (체계) 계획적·체계적인 수업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효과적인 수업 전개 및 지역의 우수한 체육시설을 적극 활용한 교육과정 재구조화 운영
- 3) (안전) 학생의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준비·정리 운동 철저 및 체육시설, 기구 등의 점검을 주기적 실시하여 안전사고 예방 의무 성실 이행

※ 수업 전·후 노후 체육시설 및 위험 기구 등은 주기적 점검과 관리·감독 철저

- 4) (맞춤) 성별·연령·체력 수준 등을 고려한 맞춤형·수준별 수업계획·실시를 위한 학생 선호도, 희망 등을 사전에 파악하여 수업 운영

다. 원활한 체육과 교육과정 운영을 포함한 체육활동 활성화 지원 예산 편성

(학교체육진흥법 제6조 제2항, 제7조 제2항)

※ 학교스포츠클럽 전담교사 수당, 학생의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지원(필요 장비 및 대회 참가), 체육 교재 및 기자재, 용품 등 학생의 체육활동 진흥에 필요한 경비 지원

※ 학교체육 행사 개최, 학교 간 경기대회 등 체육 교류활동 활성화 경비 지원

※ 중점학교스포츠클럽(학교운동부) 운영 예산은 별도 편성

2. 체육수업 운영의 자율성 확대 및 체육수업 방법 개선

가. 역량 함양을 지향하는 교수·학습

체육과 신체활동 역량

- ❖ (움직임 수행 역량) 신체활동에 적합한 움직임 기능과 방법을 효율적·심미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능력
- ❖ (건강관리 역량) 체력 및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을 유지하고 증진하는 능력
- ❖ (신체활동 문화 향유 역량) 다양한 신체활동 문화를 전 생애 동안 즐기며 타인과 상호 작용할 수 있는 능력

나. 체육과 교육과정의 특성을 고려한 효율적 수업 운영

- 1) 다양한 체육수업모형, 교수-학습 전략, 수업 기법, 교육 기자재 활용
- 2) 신체활동을 직접 체험하는 학습 활동뿐만 아니라 다양한 간접 학습 활동(예 : 읽기, 쓰기, 감상하기, 조사하기, 토론하기 등)을 포함하여 통합적으로 지도

다. 체육 교과협의회 활성화

라. 체육수업 내용의 선택, 지도 방법, 수업시간 운영 등 자율성 확대

1. 초·중등 교원의 체육수업 지도역량 강화

- 가. 초등학교원(체육전담교사) 및 체육교사의 온·오프라인 연계 과정 중심 수업, 체육실기 지도 역량, 체육 진로교육 역량 제고 지원
- 나. 체육교육 관련 집합 연수 또는 원격연수과정 2학점 이상 이수 권장

원격연수과정 개설 현황 (중앙교육연수원 / 경남교육연수원)

- ❖ (중앙) 온·오프라인 연계 체육교육의 실제(초등, 중등) (20차시)
- ❖ (중앙) 365+ 체육온활동 프로그램(초급, 중급, 고급) (각 10차시)
- ❖ (중앙) 학교운동부 운영의 이해와 실제(10차시)
- ❖ (중앙/경남) 교원맞춤형 학교스포츠클럽 지도·운영 역량 강화 (15차시)
- ❖ (중앙) 학교스포츠클럽 운영의 실제 I (15차시)
- ❖ (중앙) 학교스포츠클럽 운영의 실제 II (15차시)
- ❖ (중앙) 체육활동 안전사고 예방(초등 교원용, 중등 교원용) (각 15차시)
- ❖ (중앙) 초등 체육 수업의 첫걸음 이것부터 시작해요 (10차시)
- ❖ (경남) 스포츠를 새롭게 다르게, 학교체육 역량강화 과정 (15차시)

- 다. 지역 연합 전문적학습공동체, 교사 연구 동아리 활성화를 통해 수업 방법 및 교수법을 개발·보급하고 실효성 있는 현장 중심 연구 확대
- 라. 체육수업 방법 개선을 위한 장학사, 수석교사, 우수교사 등을 활용한 컨설팅 활성화
- 마. 체육과 교수-학습 활동, 학교스포츠클럽 및 학교운동부 운영 등에 관한 정보공유의 기회 지속적 제공(대한민국 체육교사 축전(교육부), 학교체육 성과보고회 등)
- 바. 학생의 발달단계 및 진로 적성을 고려한 체육계열 진로교육 역량 제고 지원

2. 초등 생존수영 교육 인식 제고를 위한 교원 역량 제고 지원

- 가. 초등학교원 대상 실기 기능 습득과 이해도 제고 및 지도 역량 강화를 위한 생존수영 교육 연수

※ 자가 생존능력, 부력 체험, 수중 적응 활동, 선박 탈출하기 등 생존 기능 실습 중심

- 나. 교수자원 확보 및 시설 활용이 가능한 교육청 해양수련원(서울·충남) 및 해양경찰청 교육원 등에서 교원 연수 개설·운영

※ 유관기관 협의(2월) → 연수 과정 개발(~4월) → 대상자 선발(5월) → 연수 운영(상·하반기)

- 다. 교육부와 해양경찰청 간 협력체계 구축을 통하여 생존수영 연수 프로그램 운영 및 기반 시설 활용 지원 등 협업

3. 초등학교 체육 교과전담교사 지정 · 운영

가. 초등학교 체육 교과전담교사 지정 · 운영을 확대하여 체육수업 지도 및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등 학생 체육활동 활성화

1) 초등학교 교과전담교사 지정 시 체육교과 전담교사 우선 지정

2) 6학급(1, 2학년 제외) 이상 초등학교는 체육 교과전담교사 1명 이상 지정·운영 권장

나. 체육교과 전문성이 있는 교사(체육심화과정 이수자, 체육관련 대학(원) 이수자, 체육 부장 및 체육 교과전담교사 경력자) 우선 지정

1) 그 외 체육 교과전담교사는 전문성 향상을 위해 체육교과 연수과정 이수 권장

2) 교육대학의 체육심화과정 전공 교사중심 체육전담교사 직무·자율연수 이수

다. 체육(체육전담)교사의 교육활동에 필요한 피복비를 학교 예산에 반영 적극 권장

※ 경남교육청-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남지부 단체협약서(2021.10.18.)

4. 초등(특수)학교 스포츠강사 지원

가. 사업기간: 2026. 3 ~ 2027. 2. (12개월)

나. 사업규모: 214명(특수 1명 포함)

1) 초등(특수)학교 스포츠강사 신규채용 없음

2) 중도 사직 등의 사유로 결원 발생 시 추가 선발 없음

다. 강사 근로계약 체결 및 복무 관리 : 학교장

라. 근무 범위

1) 체육수업 보조자로 담임교사 책임하에서 체육수업 협력 지도

2) 여름·겨울방학 프로그램 운영 (각 연속 5일간, 일 3시간 이내)

3) 정규 수업(3~6학년) 보조 외 학교스포츠클럽 지도

4) 기준시수(주당 18시간) 준수를 원칙으로 하되, 순회 근무 및 업무 여건 등을 고려하여 기준시수 초과 가능(최대 22시간(교과보조-21시간, 스포츠클럽-22시간)까지 수당지원)

마. 기타 사항

1) 연차 유급휴가 관련 미사용 수당 도교육청 예산으로 지원

2) 스포츠강사는 취업규칙에 따라 퇴직적립금을 적립하여 퇴직 시 지급

3) 전보는 교육지원청 내에서 하되, 학교장과 스포츠강사가 희망할 경우 동일 학교에 1~4년간 근무 가능(세부 지침은 초등스포츠강사 지원계획 수록)

4) 시군 간 전보는 2022학년도부터 매년 희망자에 한하여 시행

5) 출장 시 여비는 해당 학교에서 지급

6) 스포츠강사 채용 전 (성)범죄 경력 및 아동·청소년 학대 범죄 경력 조회, 마약검사 (기본 검사로 가능) 필수 실시

강사 결격 사유 관련 법령

- ❖ [초·중등교육법 제22조(산학겸임교사 등)] ①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학교에 제19조제1항에 따른 교원 외에 산학겸임교사·명예교사 또는 강사 등을 두어 학생의 교육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립·공립 학교는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제1항 및 제10조의4를, 사립학교는 「사립학교법」 제54조의3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준용한다.
- ❖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결격사유)] 제4호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7) 스포츠강사의 교육활동에 필요한 피복비를 학교 예산에 반영 적극 권장

관련 공문

K-에듀파인 ⇒ 업무지원 ⇒ 알림판(일반게시판) ⇒ 기본계획 알림방 ⇒ 게시번호 (26-161859) 『2026. 초등(특수)학교 스포츠강사 지원계획』

5. 중학교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지도역량 강화

- 가. 중학교 학교스포츠클럽 강사 및 일반교과 교사 대상 연수를 실시하여 학교스포츠클럽 운영의 다양성 및 실기 전문성 제고 지원
- 나. 학교체육 정책 및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의 이해, 학교스포츠클럽을 통한 인성 지도, 학교 안전 교육의 이해, 성폭력 예방교육
 - 1) 학교스포츠클럽 전담교사가 단위학교 자체 연수 계획 수립
 - 스포츠강사(15시간 내외), 일반교사(2~4시간)
 - 2) 이론 및 학교스포츠클럽 지도 사례 중심 연수 병행
- 다. 중학교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모형, 중학교 학교스포츠클럽 지도교원용 교수법 자료 및 연수 프로그램 활용

중학교 학교스포츠클럽 길잡이

- ❖ 교육부 홈페이지 탑재 : 중학교 학교스포츠클럽활동 개선 방안 연구
- ❖ (주요 내용) 단위학교용 운영매뉴얼, 창의적 체험활동 학교스포츠클럽활동 학생용 학습자료, 학교 스포츠클럽 활동 지도서(체육교사용) 등
- ❖ (검색 방법) [교육부 홈페이지] - [정책] - [초·중·고 교육] - [‘중학교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개선 방안 연구’ 검색]

6. 중학교 학교스포츠클럽 강사 지원

가. 역할: 중학교 교육과정 내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지도

나. 사업기간: 2026. 3 ~ 12월(34주, 방학기간 제외)

다. 지원: 스포츠강사의 원활한 수업 운영과 업무처리를 위해 담당교사(일반교사 등)를 배치

- 1) 스포츠강사가 학교생활기록부 입력이 불가할 경우, 담당교사가 '창체 동아리활동'란 입력
- 2) 수당: 시간당 30,000원(세전)
- 3) 초·중등교육법 제22조 제1항,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 4에 따라, 채용 전 마약 검사(기본 검사로 가능) 결과 확인 후 계약 체결

중학교 학교스포츠클럽 강사 운영 지침

- ❖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은 창체 활동으로 해당학교 교사는 강사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며, 소속 학교 운동부지도자를 강사로 활용할 경우 학교장과 계약 수정 체결
- ❖ 중학교스포츠클럽 강사 중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따른 **아래 자격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자**는 단독 수업 진행 불가(담당교사와 협력 수업만 가능)

자격 기준

1. 대학(유치원의 경우에는 전문대학을 포함한다)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담당과목과 동일 또는 유사한 과목을 전공한 자
2.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담당과목과 관련되는 분야에 2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3.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담당과목과 관련되는 분야에 4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4.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자로서 교육감이 따로 정하는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 ❖ 중학교 자유학기 활동을 담당하는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강사의 경우, 교원자격증을 소지한 자에 한하여 단독 수업 가능
- ❖ 중학교 학교스포츠클럽 원격수업 시에도 해당시간 지도 및 수당 지급

7. 체육활동 중 안전사고 예방

가. 관리자 및 체육교사 책무성 강화

나. 학생 체육활동 시 준비운동 필수 실시와 체력수준을 고려한 운동 실시

- 1) 수업시작 전 준비운동, 과도한 경쟁방지, 보호 장구 착용
- 2) 요양호자 및 신체허약자 이상 증세 발견 시 대처 방법 숙지, 발달 단계별 교육 실시

다. 체육기구, 장비, (전기)시설 등의 주기적 점검을 통한 안전사고 예방

- 1) 강당·운동장, 오래된 체육기구(철봉, 뿔통 등) 안전성 점검 후 조치(의무)
- 2) 이동식 농구대, 배구 지주대, 핸드볼 골대 등에 보호대 설치
- 3) 매월 4일 안전 점검의 날(체육시설 및 교구 안전 점검)

라. 체육활동 안전교육 콘텐츠 활용

학교안전정보센터(<http://schoolsafes24.or.kr>)

❖ **체육활동 안전사고 예방 추천 콘텐츠**

- ⇒ (경상남도교육청) 체육수업 중 안전사고, 알아두면 줄일 수 있어요!
- ⇒ (교육부) 피노키오와 함께하는 안전한 체육시간
- ⇒ (학교안전공제회) 안전이의 슬기로운 학교체육 활동
- ⇒ (국민체육진흥공단) 뿌키와 키키가 함께하는 안전한 스포츠가 좋아요
- ⇒ (국민체육진흥공단) 뿌키와 키키가 알려주는 체육시설 안전 이용법
- ⇒ (행정안전부) 스포츠 유형별 안전사고 예방 및 대처
- ⇒ (행정안전부) 야외 스포츠 안전하게 즐기기
- ⇒ (교육부) 운동 상해 대처 방법(애니메이션)
- ⇒ (교육부) 영웅도 방심하면 위험해! 염좌
-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운동장 안전 관련 실감형 콘텐츠(VR)
- ⇒ (학교안전공제중앙회) 스포츠활동, 스포츠 환경에서의 사고 예방법

❖ **동계 스포츠 관련 안전사고 예방 추천 콘텐츠**

- ⇒ (행정안전부) 빙상/설상 스포츠 안전하게 즐기기
- ⇒ (행정안전부) 겨울철 레저 활동 스키, 스노보드, 얼음 낚시!
- ⇒ (학교안전공제중앙회) 빙상활동 시 지켜야 할 안전수칙 파악하기
-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빙상 설상 안전 관련 교육동영상

마. 체육활동 안전사고 예방수칙

체육대회 주요 종목별 안전사고 예방수칙

❖ **축구**

- ⇒ 과도한 반칙을 주의한다.
- ⇒ 헤딩이나 킥을 할 때 주변의 사람·사물을 살핀다.
- ⇒ 공을 밟거나 헛발질 하지 않도록 집중한다.

❖ **농구**

- ⇒ 무리한 공 뺏기 및 지나친 몸싸움을 하지 않는다.
- ⇒ 동료의 움직임과 공에 집중하고 시야를 확보한다.
- ⇒ 동료가 점프한 상태에서 무리한 접촉을 하지 않는다.

❖ **피구**

- ⇒ 얼굴을 향해 공을 던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 ⇒ 무릎 보호대 및 팔꿈치 보호대를 착용한다.
- ⇒ 공을 피하면서 친구와 부딪치지 않도록 주의한다.

❖ **달리기**

• 단거리 달리기

- ⇒ 실내화를 신거나 친구의 신발을 빌려 뛰지 않고, 발 크기에 맞는 본인의 운동화를 신는다.
- ⇒ 출발 전 자신의 라인을 확인하고, 달리는 도중 라인을 벗어나지 않는다.
- ⇒ 피니시 라인 속도를 유지하면서 통과 시 서서히 속도를 줄인다.
- ⇒ 여학생의 경우 시선 확보가 되지 않으므로, 앞머리를 잡거나 고개를 옆으로 돌려 뛰지 않는다.

• 이어달리기

- ⇒ 트랙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달려 사람들과의 충돌을 피한다.
- ⇒ 배턴을 교환할 때는 속도를 줄인다.
- ⇒ 배턴존 안에서 배턴을 던지지 않는다.

체육활동 안전사고 예방수칙

- ❖ 운동기구나 시설 및 활동공간의 안전성을 점검한다.
 - 시설물 정기 점검 및 자연재해에 따른 예방과 점검 실시
- ❖ 체육활동 전후로 준비운동 및 정리운동을 통해 운동 상해를 예방한다.
- ❖ 학생들의 건강 상태를 파악하여 참여시킨다.
- ❖ 활동을 할 때 체육복, 운동화, 보호 장비를 착용하도록 지도한다.
- ❖ 각종 장비를 점검하고 이동할 때에는 반드시 임장해서 지도한다.
- ❖ 자신의 능력을 파악하여 수준에 맞는 활동을 하도록 지도한다.
- ❖ 운동 종목과 장소에 따른 규칙 및 안전 수칙을 지도한다.

체육수업 안전사고 예방 포스터

체육수업 중 안전사고, 알아두면 줄일 수 있어요!

안전사고 발생원인

- 종학교** (수업시간 전 ~ 수업시간 후)
- 체육관(강당)** (시설물, 바닥)
- 체육시간** (수업시간 ~ 수업시간 후)
- 종물(종체)** (수업시간 전 ~ 수업시간 후)

수업 전

- 건강 상태 확인 및 조치
- 주변 공간의 안전 확인
- 수업 도구 안전 확인
- 준비 운동 및 보호 운동
- 복합 안전 확인(슬라이드, 롤러판 운동할 곳 우회)
- 조별만 이상 수습시 위험 요인 제거 및 조치
- 바닥 안전 확인(물기, 미끄러움, 한쪽 상태 점검)
- 체육준비실(창고) 안전 점검(창고 수리)
- 공구채, 포환 등 관리 철저

수업 후

- 정리운동
- 건강 이상 학생 관리
- 수업교구 정리 철거 및 무단 사용 금지
- 체육 준비실 무단 출입 금지

공통 내용

- 교복 차림, 앞치마 등 활동복 착용
- 안전 락의 고정된 수업을 교구 사용 시 안전 락을 풀지 않아서 발생하는 사고
- 수업시간 전 교구 사용 전 안전 점검
- 수업시간 중 교구 사용 시 안전 락을 풀지 않아서 발생하는 사고
- 수업시간 후 교구 사용 시 안전 락을 풀지 않아서 발생하는 사고
- 수업시간 중 교구 사용 시 안전 락을 풀지 않아서 발생하는 사고
- 수업시간 후 교구 사용 시 안전 락을 풀지 않아서 발생하는 사고
- 수업시간 중 교구 사용 시 안전 락을 풀지 않아서 발생하는 사고
- 수업시간 후 교구 사용 시 안전 락을 풀지 않아서 발생하는 사고

안전하고 즐겁게 수업해요.

종목별

- 축구** (축구공, 축구장, 축구화)
- 배구** (배구공, 배구장, 배구화)
- 농구** (농구공, 농구장, 농구화)
- 탁구** (탁구공, 탁구장, 탁구화)
- 아구** (아구공, 아구장, 아구화)
- 핸드볼** (핸드볼공, 핸드볼장, 핸드볼화)
- 배드민턴** (배드민턴공, 배드민턴장, 배드민턴화)
- 태권도** (태권도공, 태권도장, 태권도화)
- 검도** (검도공, 검도장, 검도화)
- 유도** (유도공, 유도장, 유도화)
- 호신술** (호신술공, 호신술장, 호신술화)
- 무예** (무예공, 무예장, 무예화)
- 체조** (체조공, 체조장, 체조화)
- 수영** (수영공, 수영장, 수영화)
- 마라톤** (마라톤공, 마라톤장, 마라톤화)
- 사이클** (사이클공, 사이클장, 사이클화)
- 스키** (스키공, 스키장, 스키화)
- 하키** (하키공, 하키장, 하키화)
- 농구** (농구공, 농구장, 농구화)
- 배구** (배구공, 배구장, 배구화)
- 축구** (축구공, 축구장, 축구화)
- 탁구** (탁구공, 탁구장, 탁구화)
- 아구** (아구공, 아구장, 아구화)
- 핸드볼** (핸드볼공, 핸드볼장, 핸드볼화)
- 배드민턴** (배드민턴공, 배드민턴장, 배드민턴화)
- 태권도** (태권도공, 태권도장, 태권도화)
- 검도** (검도공, 검도장, 검도화)
- 유도** (유도공, 유도장, 유도화)
- 호신술** (호신술공, 호신술장, 호신술화)
- 무예** (무예공, 무예장, 무예화)
- 체조** (체조공, 체조장, 체조화)
- 수영** (수영공, 수영장, 수영화)
- 마라톤** (마라톤공, 마라톤장, 마라톤화)
- 사이클** (사이클공, 사이클장, 사이클화)
- 스키** (스키공, 스키장, 스키화)
- 하키** (하키공, 하키장, 하키화)

● 목적 및 기본방침

- 초등(생존)수영실기교육 초등학교 전 학년으로 확대 운영
- 수영 활동을 통한 건강체력 육성 및 평생체육 활동 기틀 마련
- 초등학생 대상 수상 안전교육 및 생존수영 교육을 통하여 물에 대한 적응력 향상과 수중 위기 상황에서 자기 생명 보호조치 능력 배양
- 여학생 선호 종목 수업 전개 및 감성(emotion)을 끌어낼 수 있는 스포츠 환경 재구성

1-2-1

초등 생존수영 교육 지원

1. 초등 생존수영 교육 운영 내실화

가. 지역적 시설 여건 등을 고려하여 가능한 지역부터 수영 실기 교육 대상 학년 확대 추진

※ 실기교육 운영 대상: 초 3~4학년 필수

나. 초등 정규교육과정(체육수업 또는 창·체) 10시간 이상 편성하고 학교 교육계획서에도 포함하여 내실 운영

※ 초 3~4학년은 실기교육 6시간 이상 포함 생존수영 교육 10시간 이상 운영 및 실시 계획 수립, 필수 운영 대상인 3~4학년을 제외한 나머지 학년은 초등 생존수영 교육 10시간 이상 편성·운영 적극 권장, 실기교육 실시 여부 및 시수는 여건에 맞게 조정

2. 초등 생존수영 교육 운영

가. 교육지원청별 초등 생존수영 교육 계획 수립 후 내실 운영

나. 생존수영 교육 지원 예산은 강사비, 시설사용료, 교통비, 용품비, 운영비 등으로 효율적 집행

다. 생존수영의 핵심인 수중에서 자기 생존능력을 체득시키는 생존기능 중심 교육을 통해 위기 상황 대처 능력 향상

※ 생존·구조·영법 중심 실기교육 ⇨ 생존기능 중심 이론·실기교육(10시간 이상)

라. 개인별 성취 수준을 고려하여 지도함으로써 개인별·수준별 성취도를 높이고 생존기능 중심 수영교육 매뉴얼, 생존수영 워크북(학생용, 교사용), 생존수영 관련 수업자료(동영상) 적극 활용하여 동기 유발

※ 학교체육포털(<https://www.cspep.or.kr>) 자료실: 생존수영 관련 자료 활용

※ 생존수영 교육 실시 전, 강사에게 매뉴얼 내용으로 교육 실시할 것을 요청

마. 초등 생존수영교육을 하는 수영장 수질은 ‘체육 시설법 시행규칙’의 수영장업 수질기준을 준용하여 학생 안전 확보

바. 해양수련원(서울·충남)/해양경찰청(해양교육원)과 연계한 핵심 강사 양성 연수, ‘수영 교육 지도역량 신장을 위한 초등 생존수영(15차시)’ 원격연수(경남교육연수원) 적극 참여

3. 초등 생존수영교육 강사 자격

가. 전문 자격증을 취득한 강사가 초등 생존수영 교육에 참여하도록 자격요건을 부여하여 체계적이고 전문성 있는 교육 실시

※ 학교가 농산어촌과 같이 지리적 여건상 자격취득 강사와 계약이 어려울 때는 수영선수 이력 등 전문 실기 능력 소유자도 가능

나. 초등 생존수영교육 강사 자격 현황

구 분	관련 법규	자격증 명칭
법률	수상구조법	수상구조사
	국민체육진흥법	체육지도사
	수상레저안전법	인명구조요원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수상안전요원
	대한적십자사조직법	수상안전강사
민간	해경청 승인	생존수영지도사

관련 공문

K-에듀파인 ⇒ 업무지원 ⇒ 알림판(일반게시판) ⇒ 기본계획 알림방 ⇒ 게시번호(26-161858)
『2026. 초등생존수영 추진 계획』

1. 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한 학교 계획 수립 및 환경 재구성

가. 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한 기본지침 수립 및 단위학교 계획 수립(필수)

※ 학교체육진흥법 제13조의2(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 지원) 교육부 장관은 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 기본지침 수립하여 교육감 및 학교장에게 통보, 학교의 장은 기본지침에 따라 매년 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 계획을 수립·시행

나. 여학생 특성을 반영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체육활동에 대한 긍정적 인식 함양과 스스로 참여하는 태도 및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교육과정 내·외에서 여학생 선호 종목 수업 전개 및 감성(emotion)을 끌어낼 수 있는 스포츠 환경 재구성

2. 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 마련

가. 체육수업 다양화

- 1) 학기 시작 전 (여)학생 대상 선호 조사를 통해 특성, 수준 등을 반영한 수업 및 프로그램 등을 계획하여 실시

※ 전체 학생 대상 희망 조사 하되, 여학생 희망 반영 등 학교 여건에 맞게 실시

※ 여학생 선호 종목: 넷볼, 배드민턴, 창작댄스, 요가, 필라테스, 티볼, 풋살 등 여학생 친화 신체활동

- 2) 여학생 맞춤형 교수·학습 방법, 체력 수준과 참여도 등을 고려한 맞춤형 수업(평가) 시행

- 3) 여학생들이 불편함 없이 체육수업과 신체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시설 개선 및 친화적 체육용품 마련 제공

※ 여학생 전용 탈의실, 샤워실 등을 마련 및 이용에 제한되지 않도록 유지·관리

※ 기존 스포츠 종목의 경기규칙 변경·적용과 용·기구 등을 변형하여 신체활동에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재밌는 프로그램 운영, 및 청결한 상태의 용품 관리 등

나. 여학생 친화적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

- 1) 교육지원청 학교스포츠클럽 대회는 5종목 이상 여학생 종목 운영, 여학교는 5종목 이상·남녀공학은 2종목 이상 교내 학교스포츠클럽 리그 여학생 종목 운영

※ 넷볼, 킨볼, 치어리딩, 댄스, 요가, 줄넘기, 티볼, 풋살 등 여학생 친화 종목 등

- 2) 학교(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여학생 체육동아리 활동과 연계하여 선후배가 함께 교류, 참여할 수 있는 멘토링 프로그램 등 활성화

※ 선배와 후배가 자연스럽게 매칭되어 스포츠활동을 통해 학교생활 등 멘토-멘티 역할 수행

- 3) 학교 및 교육(지원)청 단위에서 우수활동 여학생에게 인증서 및 상장 수여 등을 통해 인센티브를 마련하여 참가 동기 부여

※ 여학생 스포츠리더 인증서, 체력 우수 및 활동 참여 인증서 등 제공

다. 여학생 스포츠 데이 등의 각종 행사 운영

- 1) 학교 및 교육지원청 수준의 '(가칭)여학생 스포츠데이'를 지정·운영을 통해 체육 관련 행사 등과 연계한 활기찬 학교 분위기 조성

※ 체육대회 및 구기종목 대회 등과 연계하여 여학생 중심 신체활동 증진 행사 운영(학사일정 고려 운영)

- 2) 스포츠리더로서 역량 강화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한 '스포츠 리더단', 'SNS 기자단', '심판 아카데미' 등 자치활동 연계 행사 운영

1. 기후환경 변화에 대비하여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는 체육수업 준비

가. 미세먼지 예·경보 상황 수시 확인

나. 미세먼지 관련 질환자 파악 및 체육수업 특별관리

다. 고농도 미세먼지 상황 대비 실외체육수업 대체 사전계획 수립

※ 교육부 학생건강정보센터(<https://www.schoolhealth.kr>) 자료실 - '실내 신체활동 프로그램' 활용

라. 당일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에 도달할 경우 학사운영 조정 절차 사전 점검

2. 미세먼지 예·경보제에 적극 대응하여 체육수업 진행

가. (예보등급) 4단계(좋음 - 보통 - 나쁨 - 매우나쁨)

구 분		등급($\mu\text{g}/\text{m}^3$)					
		좋음	보통	나쁨		매우나쁨	
예보 물질	미세먼지 (PM ₁₀)	0~30	31~80	81~150		151 이상	
	초미세먼지 (PM _{2.5})	0~15	16~35	36~75		76 이상	
	초미세먼지 (PM _{2.5})	환경부 위기경보			관심	주의	경계
	비상저감조치	비상저감조치 미발령			발령	3일 이상	5일 이상
수업 대응		수업전환 기준	실외수업	실외수업	자체	실외수업	단축
		및 대체안 마련	점검	실내수업	대체	또는 금지	

나. (경보 발령) 주의보와 경보로 구분

구 분	발령 요건	해제 요건	수업 대응
주의보	미세먼지 (PM ₁₀) 시간 평균농도가 150 $\mu\text{g}/\text{m}^3$ 이상 2시간 지속	시간 평균농도가 100 $\mu\text{g}/\text{m}^3$ 미만일 때	실외수업(활동) 단축 또는 금지
	초미세먼지 (PM _{2.5}) 시간 평균농도가 75 $\mu\text{g}/\text{m}^3$ 이상 2시간 지속	시간 평균농도가 35 $\mu\text{g}/\text{m}^3$ 미만일 때	※ 실외 체육활동, 한강체험 학습, 운동회 등을 실 내수업(활동)으로 대체
경보	미세먼지 (PM ₁₀) 시간 평균농도가 300 $\mu\text{g}/\text{m}^3$ 이상 2시간 지속	시간 평균농도가 150 $\mu\text{g}/\text{m}^3$ 미만일 때	실외수업(활동) 금지
	초미세먼지 (PM _{2.5}) 시간 평균농도가 150 $\mu\text{g}/\text{m}^3$ 이상 2시간 지속	시간 평균농도가 75 $\mu\text{g}/\text{m}^3$ 미만일 때	

다. 예·경보제 확인을 위한 SNS 가입·활용 권장

1) 환경부 에어코리아 누리집: <https://www.airkorea.or.kr> (우리동네 대기정보 앱)

※ 시·군 권역별 미세먼지 예보 등급 및 세부수치 확인 가능(문자 서비스 신청 시 나쁨 이상일 때 알림 제공)

2) Air경남대기환경정보: <https://air.gyeongnam.go.kr>

※ 경남 각 시·군별 18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미세먼지 경보(주의보·경부) 발령 알림 제공

1-3

건강체력 증진 프로그램 운영 강화

● 목적 및 기본방침

- PAPS 측정 후 평가 결과 개인별 출력 제공 의무화
- 측정 결과를 토대로 건강체력 증진 프로그램 운영 의무화
- 단위 학교의 특성에 따른 다양한 건강체력교실 운영 프로그램 개발·보급
- 저체력 및 비만 학생 대상에서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체력 증진 프로그램으로 확대 운영
- 건강체력 증진을 위한 학교의 책무성을 강화하고 '진단-결과-피드백 제공-지속·관리·연계'로 이어지는 선순환 체제 구축

1-3-1

학생건강체력평가제(PAPS) 운영 내실화

1. 학생건강체력평가제(PAPS) 대상 확대

구 분	개정 전(~'25. 2월)	개정 후('25. 3월~)	「학교건강검사규칙」 일부 개정('25. 2월)
의무	초5~고3	초4~고3	
선택	초4	초3	

2. 학생건강체력평가제(PAPS) 운영

가. 근거

- 학교보건법 제7조 제1항(건강검사 등)
- 학교건강검사규칙 제3조 제2항(건강검사 실시: 신체의 능력)

나. 대상: 초등학교 4학년(초등학교 3학년 선택) ~ 고등학교 3학년

다. 방법: 정확한 측정을 통해 학생 개개인의 체력 수준을 진단하고 측정 결과 안내 의무화

※ 측정 절차(예시)

① 체육교과협의회 → ② 종목 선정 → ③ 교직원 연수 → ④ 종목별 담당교사 모의 측정 →
⑤ 실제 측정 → ⑥ 나이스 입력 → ⑦ 체력 통지표 발송 → ⑧ 건강체력교실 운영 → ⑨ 사후관리

※ 나이스 사용자 매뉴얼(학교행정-학생건강체력평가제-PAPS-학교) 활용: 경상남도교육청 누리집-체육예술건강과 자료실

라. 시기

- 연 1회(신속한 체력 진단을 통한 맞춤형 체력 증진 활동을 위해 4월 이내 실시 권장)
- 체육수업 시간 활용 또는 전일제 등을 통해 운영
- ※ 예시: (3월 2주 ~ 4주) PAPS 집중 운영 ⇒ (4월 ~) 수준별 맞춤형 프로그램 연간 운영
- ※ 건강체력교실 운영 후 수시 측정은 학교 여건에 따라 자율적 운영
- ※ 단위학교 학생건강체력평가(PAPS) 실시 계획 수립 철저(학교장 결재)

마. 종목: 측정 종목 체력 요소별 1가지 선택하여 측정·평가

체력 요소	측정 종목
심폐지구력(3)	① 왕복오래달리기(초 15m, 중·고 20m) ② 오래달리기-걷기(남: 1,600M, 여: 1,200M, 초등 1,000M(초 3~4학년 제외)) ③ 스텝검사(초 3~4학년 제외)
근력(1) 및 근지구력(2)	④ 악력 ⑤ 윗몸말아올리기 ⑥ (무릎대고)팔굽혀펴기(초등 제외)
유연성(2)	⑦ 앉아윗몸앞으로굽히기 ⑧ 종합유연성검사
체지방(2)	⑨ 체질량지수(BMI) ⑩ 체지방량
순발력(2)	⑪ 제자리멀리뛰기 ⑫ 50m달리기

※ 국민체육진흥공단 체력인증센터: PAPS 측정 장비·인력 등 무료 지원(<http://nfa.kspo.or.kr>)

연번	센터명	위치	전화번호
1	창원	시민생활체육관	055-712-0781
2	사천	사천국민체육센터	055-835-2066
3	경남	마산대학교 미래관	055-230-0155

바. NEIS 입력 방법

- 1) [PAPS]-[통계 및 현황]-[PAPS통계/제출]-[2026학년도 설정]-[통계조회]-[통계 생성]-[승인요청: 기안문 작성]-[제출: 교육청 전송/(마감) 매년 11월 중순까지]

※ 모든 학급 측정마감 후 통계 생성하고 결재 완료되어야 교육청 전송 버튼 활성화 → 반드시 전송

- 2) 특수학생: 체력측정이 가능한 학생에 한해 측정 실시, 후속 조치도 동일하게 적용

※ 측정할 수 있는 종목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일부 종목만 측정하면 입력 누락 학생으로 조회 되긴 하나 마감은 가능(미입력 사유를 필히 내부결재 처리)

- 3) 전입생: 전입학교의 필수평가 측정종목 전체 재측정 입력, 중복되는 평가 종목은 전출 학교의 기록 그대로 입력 가능

2. 학생건강체력평가(PAPS) 운영 유의 사항

가. 지도교사 임장지도, 사전 준비운동, 측정 종료 후 정리운동 철저

나. 측정 전·후 학생 건강상태 확인 및 측정 요령 안내 의무화

다. 기타 안전하고 효율적인 측정을 위한 조치 실행

3. 학생건강체력평가제(PAPS) 운영 후 유의 사항

가. 정확한 측정을 통한 체력 수준 진단 및 측정 결과, 운동처방 안내

나. 결과는 교육정보시스템(NEIS)에 입력하여 학생·학부모가 조회할 수 있도록 관리

다. 교내에 체력증진 관련 정보 게시, 체력 향상 구역 운영 등 건강체력에 대한 관심 증가와 학생 스스로 자발적 참여 유도

라. 학생건강체력평가제(PAPS) 우수학생에 대해 단위학교 학교장 표창 수여를 통해 학생의 자율 체력증진 장려

1. 건강체력교실 운영 의무화

가. 시기, 담당자, 프로그램(기존 학교스포츠클럽 연계, 별도 클럽 구성 등), 지도방안 등이 포함된 학교별 건강체력교실 운영 계획 수립 및 연중 상시 운영

※ 「학교체육 진흥법」 제9조(건강체력교실 등 운영), 「학교체육 진흥법」 제5조(건강체력교실의 설치 및 운영(건강체력교실의 설치 및 운영)에 따라 모든 학교에서는 반드시 운영해야 하므로 건강체력교실 운영에 필요한 예산 편성(확보) 권장

나. 학생건강체력평가제(PAPS) 4·5등급, 비만 학생 및 희망자 등으로 참가 대상 확대 운영

다. 국민체육진흥공단 체력인증센터 주관 ‘국민체력100’ 사업의 체력 증진교실(대면·비대면)을 통해서도 학생 참여 가능

< PAPS-건강체력 향상 프로그램 운영 연계(예시)>

1 PAPS [상반기·수시]

학교 여건에 맞는 체력 진단 운영



2 건강체력교실 [연중]

저체력자·비만·희망학생 대상 프로그램 운영
※ 단위 학교의 운영비 편성 협조

1 「PAPS」 측정 운영 모델

- ❖ (전일제 행사형) 학교 특성, 시설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전일제로 ‘(가칭)체력왕 선발의 날’을 계획, 학생들의 흥미를 유도하여 PAPS 정시(수시) 측정 실시 및 우수학생 시상 등 행사 형식으로 운영
- ❖ (상시 측정형) PAPS 측정 장비 및 장소 등을 사전에 준비·안내하여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아침 등교 전, 점심시간, 쉬는 시간, 방과후 시간’ 등을 수시로 활용하여 개인별·반별로 PAPS 측정 실시
- ❖ (교과수업 연계형) 체육수업의 교수학습 내용으로 편성하여 학생들이 모듈별·개인별로 ‘목표설정 - 연습 - (수시)측정 - 결과공유’의 과정을 통해 건강체력증진 활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도록 계획·운영

2 「건강체력교실」 상시 운영 유형

- ❖ (온-오프라인 프로그램 연계) ‘국민체력 100’과의 협업을 통한 실시간 건강체력교실 참여, 학교 자체 프로그램(도교육청 제작 영상 콘텐츠(경남교육 유튜브) 등) 활용
- ❖ (학생 흥미 맞춤형 프로그램 활용) 학생들이 자기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적용·활용하여 건강체력교실 활동 참여율 제고 유도
- ※ (예) 스피닝 교실, 필라테스, 힙합댄스(여학생 특화) 운영

2. 학교별 건강체력교실 운영 유의 사항

가. 매년 학교별 건강체력교실 운영 계획 수립

※ 건강체력교실 운영 절차(예시)

① 학교 담당자 지정 → ② 건강체력교실 운영 계획 수립 → ③ 중점관리 학생 대상 선정 →
④ 건강체력교실 운영 → ⑤ 건강체력평가(PAPS) 및 처방 → ⑥ 평가 및 결과 활용계획

1) 건강체력교실 운영 시기 및 담당자, 프로그램, 참여학생 지도방안 등 포함

가) 건강체력교실 운영을 통한 저체력, 비만 학생의 건강체력 향상

나)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참여, 체육관련 동아리 참여, 무료 신체활동 프로그램(신나는 주말체육학교 등) 참여 권장

2) 일회성 운영이 아닌 '교육-상담-관리'로 이어지는 선순환 체제 구축

나. 건강체력교실 중점 운영학교 운영

1) 건강체력교실 중점 운영학교 공모: 초·중·고 260교, 교당 1,250천원 지원 예정

※ 추후 별도 공문 안내

2) 건강체력교실 내실 운영 및 학생건강체력평가 우수 체력(1~3등급) 확대 목표

3) '온라인 실시간 건강체력교실' 참여 권장(국민체력100 창원마산회원체력인증센터 협업)

4) 해당 학교별 특색 반영 건강체력교실 프로그램 운영

5) 건강체력교실 중점 운영학교의 PAPS 측정 결과 향상도 데이터 검증

다. 건강체력교실 도움자료 활용

1) 건강체력교실 활용 영상 콘텐츠(14주차)

2) 교실이나 가정에서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주제형 영상 콘텐츠: 몸만들기 콘텐츠 42편
(건강체력교실 활용 영상 콘텐츠 연계)

영상 탑재처

❖ '경남교육(경상남도교육청)' 유튜브

❖ '경남체육교과교육연구회' 네이버 카페(<https://cafe.naver.com/gnphysicaledu>)

1. 틈새 운동 확산

가. 체육활동이 일상화되도록 아침·점심·쉬는 시간 등 규칙적인 신체활동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한 틈새 운동 확대

※ [운영 예시] (아침) 학교 여건에 따라 희망 학생 참여 / (창체 및 점심) 1교사 1체육 동아리 운영 등 / (방과후) 자율 체육동아리, 학교스포츠클럽 활동과 연계 운영

나. 학교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학생 건강체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적용

다. 온라인 튜터링 콘텐츠(198종), 메타스포츠 School 및 e-paps 앱, (초등)팝스체조 등 가용한 신체활동 프로그램 적극 활용

2. 앱 및 온라인 튜터링 콘텐츠 활용 학교체육 활동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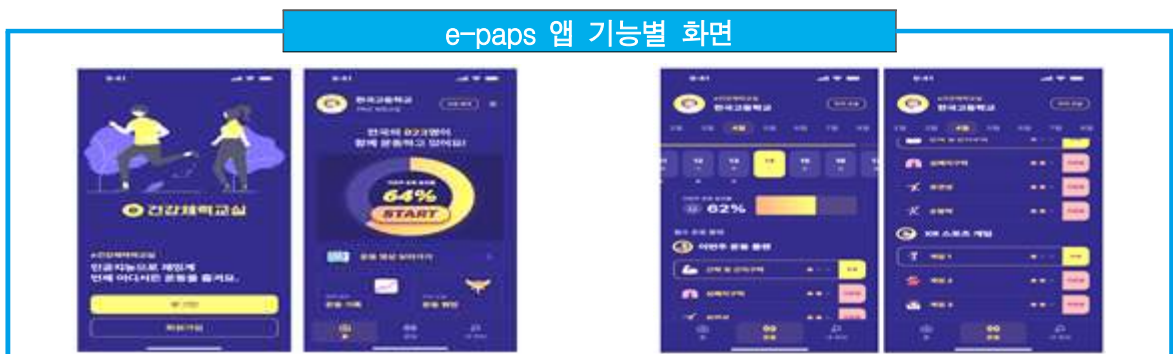
가. 메타스포츠 School 앱: 시·공간을 초월한 교수·학습 및 학생 자기주도적인 신체활동 실천을 위한 ‘온라인 체육교실 앱’ 지원

※ 운동 유형별 수행 기록·누적 관리, 포인트를 누적하여 자신의 아바타 업그레이드, 교사 모둠활동 지원 및 과제 제시·확인·피드백·순위 확인 제공(애플용, 안드로이드용)



나. e-paps 앱: 건강체력교실 등 학생 건강체력 증진을 위한 운동처방 및 교사 업무 경감 (계획서 등) 기능 등 지원

※ 학생건강체력평가(PAPS) 등급별 개별 운동처방, 64개 동작, AI 동작인식 운동자세 분석, 실시간 피드백, 운동 달성률, 랭킹시스템 적용 등 제공



다. 온라인 튜터링 콘텐츠: 영역별·수준별 신체활동 영상, 온·오프라인 체육수업 지원을 위한 콘텐츠 탑재

※ 에듀넷, 학교체육포털(cspep.or.kr) 누리집, 진흥회 TV 유튜브 채널 등

온·오프라인 연계 온라인 튜터링 체육수업(활동) 지원 콘텐츠

- ❖ (건강) 건강체력평가 측정, 서킷트레이닝, 인터벌트레이닝, 웨이트트레이닝, 스네그골프
- ❖ (도전) 기계체조, 육상, 스텝킹&저글링, 필라테스&요가, 태권도, 사격
- ❖ (경쟁) 축구, 풋살, 플로어볼, 얼티미트, 킨볼, 농구, 넷볼, 야구, 배드민턴, 배구, 탁구, 족구
- ❖ (표현/안전) 창작댄스, 치어리딩, 스텝핑, 리듬트레이닝/심폐소생술, 생존수영
- ❖ (365+ 체육온활동) 초급, 중급, 고급 각급 별 총 30개 주제 총 148개 영상 콘텐츠
- ❖ (e-PAPS) 운동형, 표현형, 스포츠형 총 50개 영상 콘텐츠
- ❖ (중학교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건강운동형, 스포츠형, 댄스형 등 총 26개 주제(주제별 7~17차시)

● 관련 근거

- 학교체육 진흥법,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령,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규칙
- 초·중등 학교체육 활성화 방안(교과부-문화부 공동 발표, 2010.9.)
- 학교체육·예술교육 내실화 방안(교육과학기술부, 2011.4.)
-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매뉴얼
- 제3차 학교체육진흥 기본 계획(2024.1.5.)
- 2026년 학교체육 활성화 시행계획(교육부 민주시민교육과, 2026.2.)

● 추진 계획 및 개요

추진 사업	목표	추진시기	대상(주관)
학교스포츠클럽 운영비(통합사업운영비) 지원	1회	3월	전 학교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의무화	연중	연중	전 학교
교육지원청 단위 학교스포츠클럽 리그 운영 지원	18청	3~12월	교육지원청
우수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지원	연중	3~12월	대상 학교(공모 300클럽)
[학교/지원청/도/전국] 각종 대회(축전) 운영	연중	3~12월	전 학교
학교스포츠클럽 등록 및 실적 입력	연중	연중	전 학교
등록 및 실적 현황 교육부 전송	1회	12월	학교→교육(지원)청→교육부

● 기관별 역할

교육지원청	단위 학교
•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점검 • 중학교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지원 • 각종 학교스포츠클럽 대회(축전) 지원 • 지역청 단위 학교스포츠클럽 리그 상시적 운영 • 리그 운영 지원단 또는 학교체육지역협의체 구성 및 운영	•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의무화 • 학교스포츠클럽 등록률 및 실적을 제고 노력 • 스포츠클럽 활동 시 안전교육 실시 • 5종목 이상 스포츠클럽 활동 리그 운영 • 학생자치회 주도의 교내리그 활성화

2-1

학교 단위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 목적 및 기본방침

- 신체활동을 통한 건강체력 증진 및 바른 인성 함양, 평생체육 기틀 마련 등 긍정적인 효과 기대
- 학생 주도 자율체육활동 활성화를 통한 건강체력 증진 및 활기찬 학교 분위기 형성
- 학교스포츠클럽 의무 운영을 위한 운영비 지원(통합사업운영비)
- 학생 주도 학급단위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및 교내 학교스포츠클럽 리그 활성화

2-1-1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의무화

1. 학교스포츠클럽 운영비 지원

가.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의무화(1학생 1스포츠 생활화)에 따른 '통합사업운영비'로 학교 스포츠클럽 운영비 지원

나. 1학생 1스포츠 활동 생활화, 각종 대회출전 경비 지원, 교내리그 운영 지원 등

※ 인건비(강사비) 명목으로 사용 금지

다. 지원금액 : (전 학교) 학급 수에 따라 차등 지원

학급 수	3학급 이하	4~8학급	9~13학급	14~18학급	19~23학급	24~28학급	29~33학급
금액	400천원	700천원	1,000천원	1,300천원	1,600천원	1,900천원	2,200천원
학급 수	34~38학급	39~43학급	44~48학급	49~53학급	54~58학급	59학급이상	
금액	2,500천원	2,800천원	3,100천원	3,400천원	3,700천원	4,000천원	

2. 학교스포츠클럽 내실 운영

가. 학생들의 다양한 신체활동 참여 기회 제공을 위해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의무화

※ 「학교체육 진흥법」 제6조(학교체육 진흥의 조치 등), 제10조(학교스포츠클럽 운영)

나. 학교스포츠클럽 전담교사 지정 및 업무 수행 시 학교 예산(자체)의 범위에서 지도수당 지급 가능하며 이때 지급 기준, 지급 규모 등은 학교장이 결정

※ 「학교체육 진흥법」 제10조(학교스포츠클럽 운영) 제3항

※ 전담교사 지정은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계획 및 업무분장표에 반드시 포함

- 전담교사는 단위학교 학교스포츠클럽 운영을 위한 계획 수립,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교내 학교스포츠클럽 리그 운영, 스포츠강사 교내 연수, 중학교 학교스포츠클럽을 담당하는 일반 교사(체육교사 외) 및 강사 연수 등의 역할 담당

다. 학교스포츠클럽 등록(1인 1종목 이상) 및 운영 다양화

- 1) 1학기 초 학교스포츠클럽 개설 시 운영방식, 스포츠 유형 등을 다양화하여 학생 설문 조사(의견수렴) 후 개설·운영, 나이스 등록률 100% 이상

- 2) 학교 전체 또는 많은 수의 인원이 실시하는 학교스포츠클럽의 경우에는 학급별로 등록 후 운영, 체대입시반의 경우도 클럽명을 주요 활동 내용으로 개칭(기초체력증진반, 육상반 등)하여 등록 후 운영

라.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매뉴얼에 따라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 경상남도교육청 누리집 - 체육예술건강과 자료실 -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매뉴얼

2-1-2

학교 단위 학교스포츠클럽 리그 활성화

1. 학생 주도 학급단위 스포츠클럽 활동

가. 모든 학생이 최소 1개 이상의 학교스포츠클럽에 참여하도록 학교장은 의무 운영하여 체육활동 참여기회 확대 추진, 학생(자치회) 주도의 방과 후 시간, 점심시간 등을 활용하여 교내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

- 1) 1학기 초(3월)에 학교스포츠클럽 개설 시 운영방식, 스포츠 유형 등을 구분하여 학생 설문조사(의견수렴) 후 개설·운영

※ (예시) (설문·선호조사) 3월 2주 → (스포츠유형·프로그램 확정 및 운영) 3월 3주~

- 2) (나이스 등록 의무화) 담당 교원이 교육행정정보시스템(나이스, neis) 학교스포츠클럽 관리 탭에서 ‘클럽명’ 및 ‘소속 학생’ 정보 등 등록

- 3) 모든 학생들이 1종목 이상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학교 규모 및 여건 등을 고려하여 5종목 이상 학교스포츠클럽 운영(소규모학교는 여건 고려하여 운영)

※ 남녀공학인 경우 여학생 특화 종목 2종목 이상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 4) 학교스포츠클럽 운영의 특색화 및 다양화를 위하여 단위학교의 특성을 살린 ‘맞춤형 운영모델’을 개발하고, 우수사례 발굴·공유

- 5) 학생들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여 많은 학생이 참가할 수 있는 단체종목 중심으로 학급 단위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운영

- 6) 체육교사 외에 일반교과 교사도 한 가지 이상의 학교스포츠클럽 지도를 할 수 있도록 1교사 1종목 매칭 운영 권장

- 7) 안전한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위험 요소 제거, 준비·정리운동 및 안전교육 철저 등 사전 예방 활동 철저

※ 학교스포츠클럽 대회 운영·참가 시 스포츠안전재단 스포츠안전 매뉴얼, 스포츠안전 동영상 등 활용

나. 학교스포츠클럽 전담교사가 조직 및 운영을 총괄하고, 학생이 주도적으로 대회를 진행하는 학급단위 교내 학교스포츠클럽리그 활성화

※ 교내리그 심판 등으로 활동한 학생은 실제 활동시간을 봉사활동 시간 인정

다. 모든 학생의 스포츠활동 참여를 위해 학교 내 수준별 학교스포츠클럽 리그 운영 권장

※ 학교내 운동기능이 높은 학생을 위한 리그와 운동기능이 낮은 학생을 위한 리그 병행 운영

※ 능력별(1부 / 2부), 학년별(1학년 / 2학년 / 3학년), 종목별(기존스포츠 / 뉴스포츠)

[참고1]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방식

- ❶ (학생주도형) 학생이 주도적으로 스포츠클럽 팀을 개설하고, 정규수업 이외 시간을 활용하여 개인별·팀별로 학생이 주도적으로 스포츠타동 실시
 - ※ (A학교) 줄넘기클럽 : 오전 20분 줄넘기 활동 + 점심 20분 줄넘기 활동
 - ※ 연중계획서, 대회출전 계획서 등을 동아리 담당교사에게 제출하여 학교장 승인 후 실시
 - ❷ (방과후 연계형) 학생의 희망과 수요에 따라 방과 후 프로그램으로 개설하여 운영
 - ※ (B학교) 축구 학교스포츠클럽 : 방과 후 프로그램 중 '축구 스포츠클럽' 개설 등
- ☞ 학교 규모 및 여건 등을 고려하여 5종목 이상의 학교스포츠클럽 개설·운영



[참고2] 학교스포츠클럽의 스포츠타유형

- ❖ (건강스포츠) 신체 건강관리를 위해 실시하는 서킷트레이닝, 턱걸이, 버피텐, 플랭크 등
 - ※ 예) 신체활동 7560+ 운동, 건강체력교실 프로그램
- ❖ (경쟁스포츠) 팀 간의 경쟁적 요소를 바탕으로 하는 축구, 농구, 배구, 티볼 등
- ❖ (도전스포츠) 자기 자신 또는 상대방의 신체적 기량에 도전하는 육상, 사격, 체조, 씨름 등
- ❖ (표현스포츠) 신체의 움직임을 통해 자신을 표현하는 치어리딩, 창작댄스, 스타핑, 리듬 트레이닝, 방송댄스 등

2.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시간 인정 안내

- 가. 틈새 시간(1회 활동 시 나이스 활동 시간 입력 최소 단위인 20분 이상 확보)을 활용한 학교스포츠타클럽 운영 권장을 위하여 아침, 점심 등에 활동한 시간이 총 합산에 반영

고등학생이 A일 점심시간에 25분 활동하고, B일 점심시간에 25분 활동하였으면, 합산된 50분이 활동으로 인정되어 1시간 이수로 실적 인정

- ※ 합산 시간에 대한 인건비(강사비) 지급은 불가

(<예>초등학교: 20분 + 20분 = 40분(합산시간 40분(1시간) 수당 지급 불가)

- 나. 평일 2시간, 공휴일 4시간, 최소 20분 단위 입력 가능

※ [나이스] - [체육] - [학교스포츠타클럽 관리] - [학교스포츠타클럽 활동내역 관리]

- 다. 학교스포츠타클럽 활동 내용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하여 상급학교 진학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록 활동 철저

- 라. 학교스포츠타클럽 활동 내역을 11월 30일까지 교육청으로 전송 완료(나이스 상에 전송 버튼은 따로 없으므로 학교에서는 학생 활동 기록을 저장만 하면 됨)

- 마. 학교스포츠타클럽 부서명은 학생들의 실제 활동 내용이 드러나는 클럽명으로 정하여 입력하거나, 함께 적어 입력 가능

※ (작성 예시) 케이팝댄스반, 통키반(피구반), 덩크슛반(농구반) 등

훈령 및 해설

제13조(창의적 체험활동상황)

①~⑦ 생략

⑧ 「학교체육진흥법」 제10조에 따른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내용은 '동아리활동'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입력 한다. 이 경우 활동 내용은 학교장이 승인한 기간에 수행한 것으로 한정한다.

1. 클럽명
2. <삭제>
3. 특기사항

⑨ 제8항에도 불구하고 정규교육과정에 포함되지 않은 학교스포츠클럽활동은 특기사항을 입력하지 않는다.

⑩ <삭제>

기재요령

● '동아리활동'란에는 다음 5가지 항목을 예시와 같이 입력한다.

활동	입력 예시
정규교육과정 내 동아리활동	(영어회화반) 영어에 관심이 많고~
학교교육계획에 의한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자율동아리활동	(로봇반: 자율동아리)
학교교육계획에 의한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청소년단체활동(초·중학교만 해당)	(OO단: 청소년단체)
정규교육과정 내 학교스포츠클럽활동 (중학교만 해당)	(발야구반: 학교스포츠클럽) 역할을 정확히 숙지~
학교교육계획에 의한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학교스포츠클럽활동	(축구발리킥클럽: 방과후학교스포츠클럽)

● 학교스포츠클럽활동은 '창의적 체험활동'의 '동아리활동'으로 편성하며, 학교스포츠클럽명은 실질적인 활동 내용이 드러나는 클럽명으로 정하여 입력하되, 종목명이 드러나도록 병기하여 입력할 수 있다.

<예시> 줄넘기반, 케이팝댄스반, 통키반(피구반), 덩크반(농구반)

● (중학교) 정규교육과정 내의 학교스포츠클럽활동에 참여한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특기사항을 입력하되, 활동 내용을 개별적 특성이 드러나도록 간략하게 입력한다.

-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학교스포츠클럽에 가입하여 활동한 내용은 교육정보시스템 [{체육} 학교스포츠클럽관리-학교스포츠클럽관리-학교스포츠클럽활동내역관리]에서 필요시 누가기록할 수 있고, '동아리활동'에는 클럽명만 입력한다.

<예시> 통키반(피구반): 방과후학교스포츠클럽

-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학교스포츠클럽활동' 시간은 [학생생활-창의적체험활동-동아리활동관리 (담임용)]에서 {스포츠클럽정보가져오기}를 통해 동아리 영역에 반영된다.

- 1)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학교스포츠클럽활동'은 연중 활동계획서, 대회출전 계획서 등에 대해 학교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결과는 대회별, 월별 혹은 학기별 등 증빙자료와 함께 결과보고서를 제출한다.
- 2) 학생 1명이 2개 이상의 학교스포츠클럽에 가입할 수 있으나, 활동시간과 내용이 중복되어서는 안 된다.
- 3) 학교스포츠클럽 지도교사는 지도시간이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2개 이상의 클럽 지도가 가능하며, 지도하는 클럽별로 학생의 활동상황을 관리한다.
- 4) 학교장은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학교스포츠클럽활동' 실적이 상급학교 진학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동아리활동'에 클럽명이 허위로 입력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을 하여야 한다.
- 5) 학교스포츠클럽 등록 시 학교 이외에서 조직된 스포츠클럽은 인정하지 않는다.

참고

- (중학교) 정규교육과정 내 학교스포츠클럽활동 편성·운영 방법은 다음을 참조한다.
(국가교육위원회 고시 제2024-3호(2024.08.16.))
- 1) '학교스포츠클럽활동'은 학년별 연간 34~68시간(총 136시간) 운영하며, 매 학기 편성하도록 함.
 - 2) '학교스포츠클럽활동'의 시간은 교과(군)별 및 창의적 체험활동 시수의 20% 증감 범위를 고려하여 확보(3학년은 교과(군)별 시수의 20% 범위 내에서 감축)하거나, 창의적 체험활동 시수를 순증하여 확보하되, 학교 여건에 따라 연간 68시간 운영하는 학년에는 34시간 범위 내에서 '학교스포츠클럽활동'을 체육으로 대체할 수 있음.
 - 3) '학교스포츠클럽활동'의 종목과 내용은 학생들의 희망을 반영하여 학교가 결정하되, 다양한 종목을 개설하여 학생들의 선택권이 보장되도록 함.

3. 학교스포츠클럽 관련 공모사업 지원

가. 목적

- 1)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내실화를 통한 자발적인 신체활동 참여 유도
- 2) 체육수업 내용과 교내 리그전 종목 연계를 통한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
- 3) 신체활동에 참여하는 일부 학생이 아닌 모든 학생들이 함께 즐기며 참여할 수 있는 교내 수준별 학교스포츠클럽 리그 운영
- 4) 우수 학교스포츠클럽 지원을 통해 건강체력 증진 및 바른 인성 함양, 각종 학교스포츠클럽 대회 활성화 유도

나. 현황

구분	사업명	내용
자체 공모	우수 학교스포츠클럽	클럽당 1,500천원 / 총 300개 클럽(초·중·고)
		· 학교스포츠클럽 운영으로 취미와 특기를 살릴 수 있는 기회 제공 · 활동 우수 학교스포츠클럽 지원 · 각종 학교스포츠클럽 대회 활성화 지원

다. 컨설팅 및 성과보고서 제출

- 1) 컨설팅: 2026. 6~7월 중 / 온-오프라인 / 학교 담당자, 교육(지원)청 담당자, 학교체육 진흥 추진 기획팀(컨설팅단)
- 2) 성과보고서 제출: 2026. 11월 말 / 정산서 포함

2-2

교육청 단위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 목적 및 기본방침

- 지역스포츠클럽과 연계 강화
- 지역 체육시설 및 인적 자원 활용(학교체육과 생활체육 연결)
- 교육지원청 단위 리그 상시 운영을 통한 신체활동 기회 지속 제공
- 학교체육지역협의체 구축을 통한 지역의 인적·물적 지원 강화
-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다양화 도모 및 수요자의 만족도 제고 노력

2-2-1

교육지원청 단위 학교스포츠클럽 리그 활성화

1. 교육지원청 단위 학교스포츠클럽 리그 활성화

가. 운영 대상: 초·중·고등학생

※ 저학년 및 체육 배려 학생을 포함한 모든 학생들의 신체활동 참여기회 확대

※ 농산어촌 지역 소규모 학교 참여를 위해 교육지원청별 다양하고 특색 있는 리그 운영 방안 모색

나. 운영 방법: 교육지원청 단위 학교스포츠클럽 리그 상시(1·2학기) 운영

1) 기간: (1학기) 2026. 4~7월 중, (2학기) 2026. 9~12월 중

2) 방식: (1학기) 제20회 교육감배 학교스포츠클럽 대회 지역 예선 겸임 대회로 운영
(2학기) 1학기과 동일한 방식 운영, 교육장배 대회 겸임 대회, 마을 단위 스포츠클럽 리그 등 지역의 특성에 맞게 운영

3) 종목: 제20회 교육감배 학교스포츠클럽 대회 종목 및 제19회 교육감배 학교스포츠클럽 대회 종목 중 운영 제외 시범 종목(검도, 국학기공, 드론축구, 볼링, 창작댄스, 키즈런, 핸드볼)

※ (전환기 대회) 학업 스트레스 및 심신 피로 해소, 체력 향상 등을 위해 학교스포츠클럽 참여 유도

2. 교육지원청 리그 활성화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

가. 리그 운영 지원단 구성·운영

1) 교육지원청 관내 교사,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리그 운영 지원단'을 구성하여 활용

2) 지역 특성별 리그운영, 여학생 체육활동 운영, 지역 특성에 맞는 종목별 선정 등

나. 학교체육지역협의체 구성·운영

1) 교육지원청, 지자체, 유관기관, 지역대학, 체육단체, 학교가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

2) 학교와 지역사회 간의 수요·공급 플랫폼(Platform) 역할을 하여 지자체·유관기관과 원활한 협업 추진

※ 수영, 스케이트, 사격, 볼링 등 학교 밖 체육시설을 활용한 스포츠클럽 지원

1. 교육감배 학교스포츠클럽 대회 및 전국 학교스포츠클럽 축전

가. 운영 방향

- 1) 학생들의 만남을 통한 소통과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 공정·협동·도전 등 스포츠 가치를 배울 수 있도록 축제 형태의 대회 운영
- 2) 학생 자율적으로 대회를 준비(수업결손 방지)하고, 참가 시에는 과열 경쟁을 예방하며, 대회 개최는 문화 체험활동이 결합한 축제 형태로 운영
- 3) 학생들의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참가 기회 확대

나. 제20회 교육감배 학교스포츠클럽 대회

- 1) 일시: 2026. 9. 4.(금) ~ 6.(일)
- 2) 장소: 시군 분산 개최
- 3) 대상: 시군 예선에서 선발된 초·중·고 학교스포츠클럽
- 4) 종목: 정식 종목(제19회 전국학교스포츠클럽 축전 종목), 시범 종목(한궁)

※ 교육감배 학교스포츠클럽 대회 종목 변경

- 3×3 농구 정식 종목으로 운영(제19회 전국학교스포츠클럽 축전 종목 포함)
- 시범 종목은 한궁 (여학생 종목 제외 사유 적용) 외 모든 종목 폐지
- 시범 종목(전 세부 종목) 교육지원청 예선 폐지

[교육감배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규정 제19조 1항]

1. 초·중·고 학교급별 경기 중 2개 이상 종별 경기에 8개 시군 이상 참가한 종목
2. 학교스포츠클럽 종목별 등록학교 수가 24교 이상(초·중·고 합산)
위 사항을 2년 연속 모두 충족하지 못할 경우 종목 제외

다. 제19회 전국학교스포츠클럽 축전

- 1) 일시: 2026. 10~12월 중
- 2) 장소: 시도 분산 개최
- 3) 대상: 교육감배 학교스포츠클럽 대회 우승 클럽
- 4) 종목: 19종목

2026년 전국학교스포츠클럽 축전 및 개최 종목(안)

구분	유형	주관청	(’26년) 제19회 대회	(’25년) 제18회 대회
1	학교급별 (남초부, 여초부, 남중부, 여중부, 남고부, 여고부, 혼성부 등) 선발팀 대회	서울	치어리딩	치어리딩
2		부산	-	연식야구
3		대구	-	육상
4		인천	줄넘기	줄넘기
5		광주	배드민턴	배드민턴
6		대전	넛볼	넛볼
7		울산	-	축구
8		세종	-	배구
9		경기	-	농구
10		강원	-	킨볼
11		충북	피구	피구
12		충남	족구	족구
13		전북	배구	탁구
14		전남	-	-
15		경북	플라잉디스크	플라잉디스크
16		경남	플로어볼	스포츠스태킹
17		제주	-	-
18	전환기 대회	학교체육 진흥회	연식야구, 육상, 축구, 농구, 킨볼, 탁구, 스포츠스태킹, 풋살, 티볼	플로어볼, 풋살, 티볼
19			3X3 농구	
20			배구	배구
21			배드민턴	농구
계			총 21종목	총 20종목

2. 학교스포츠클럽 대회 정보시스템 구축 및 활용

- 가. 전국학교스포츠클럽 축전 및 지역대회 선수등록, 참가 확인, 경기기록 시스템 운영을 통한 체계화된 학교스포츠클럽 대회 관리
- 나. 대회참가 확인서 및 경기실적 증명서 발급, 대회 참가 신청 및 참가자 정보 관리, 대회 규정, 대회 일정, 경기 결과 안내 등
- 다. 전국 학교스포츠클럽 축전 관리·활용
- 라. 지역단위 학교스포츠클럽 대회 관리 시스템을 추가로 개발하여 이용 대상 범위 확대
- 마. 추진기관: 체육진흥회

● 관련 근거

- 교육기본법 제3조, 제4조, 제12조
- 초·중등교육법 제6조, 제30조의2, 제32조, 제33조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6조, 제7조
- 학교체육진흥법, 학교체육진흥법 시행령, 학교체육진흥법 시행규칙
-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 훈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피해학생 보호),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등
- 제3차 학교체육진흥 기본 계획(2024.1.5.)
- 2026년 학교체육 활성화 시행계획(교육부 인성체육예술교육과, 2026.2.)

● 추진 계획 및 개요

추진 사업	목표	추진시기	대상(주관)
중점학교스포츠클럽(학교운동부) 운영비 지원	2회	4월, 9월	해당 학교
중점학교스포츠클럽 지역형스포츠클럽 전환	연중	1~12월	해당 학교
지역형스포츠클럽 운영비 지원	1회	3월	교육지원청, 해당 학교
전국소년체육대회 참가 지원	1회	1~12월	해당 학교
전국(동계)체육대회 참가 지원	1회	1~12월	해당 학교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지원	연중	1~12월	전 학교
e-School 연수 및 운영 지원	연중	3~12월	전 학교
학교운동부지도자 연수	2회	4월, 9월	학교운동부지도자
학생선수·지도자·학부모 교육 운영	1회	4월	해당 학교

● 기관별 역할

교육지원청	단위 학교
· 학생선수 육성 및 지원 · 중점학교(지역형)스포츠클럽 육성학교 점검 · 각종 대회 참가 지원 · 중점학교스포츠클럽 청렴도 향상 방안 수립	· 공부하는 학생선수 육성 방안 추진 · 학생선수 학사 관리 강화 · 중점학교(지역형)스포츠클럽 청렴도 향상 노력 · 학교운동부지도자 관리 철저

3-1

선진형 중점학교스포츠클럽(학교운동부) 육성

● 목적 및 기본 방침

- 선진형 중점학교스포츠클럽(학교운동부) 운영을 위한 혁신 방안 모색
- 경남교육청에 맞는 학교운동부 혁신 방안 단계별 추진
- 학생선수의 중도 탈락, 포기에 대한 사회적 안전장치 마련
- 운동과 학업을 병행하는 경쟁력 있는 선진국형 학생선수 육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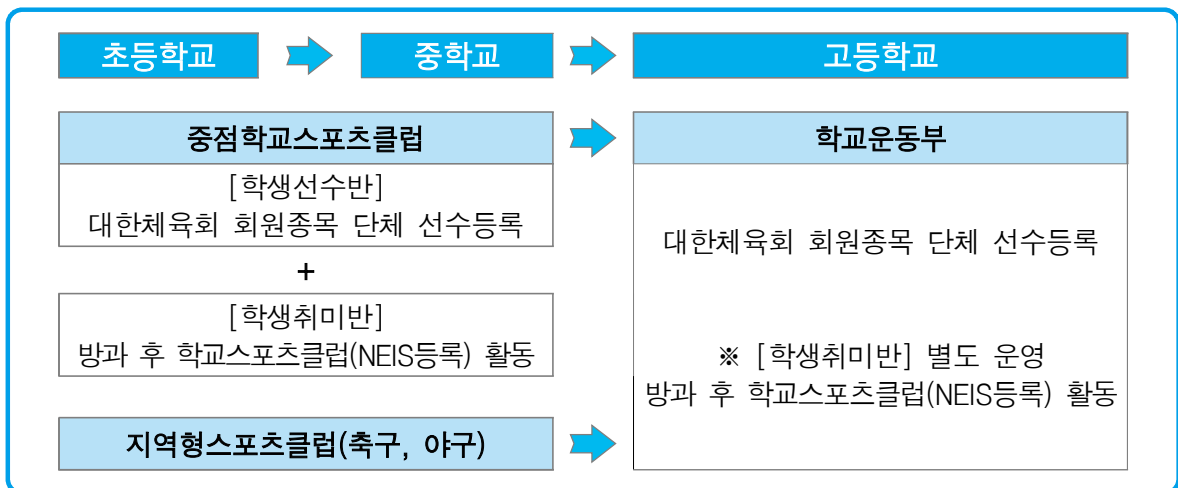
● 현황 및 문제점

- 학생선수의 중도 탈락, 포기에 대한 사회적 안전장치 미비
- 인센티브 없이 각종 책임만 강조한 중점학교스포츠클럽(학교운동부) 육성책으로 인해 학교장의 중점학교스포츠클럽(학교운동부) 운영에 대한 거부감 증대
- 끊임없는 입시 비리, 성폭력, 공금 횡령, 중점학교스포츠클럽(학교운동부)의 낮은 청렴도 등으로 인해 중점학교스포츠클럽(학교운동부)에 대한 부정적 인식 잔존
- 실적 위주의 상급학교 진학 제도, 승리 지상주의 등으로 인해 학생 선수들이 정상적으로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못함에 따른 학력저하 초래

3-1-1

경남형 학교운동부 육성 모형

1. 선진형 학교운동부 육성 모형



2. 학교운동부 용어 변경

- 가. 초·중학교 학교운동부 → 「중점학교스포츠클럽」
- 나. 고등학교 학교운동부 → 「학교운동부」
- 다. 초·중·고 「학교운동부」 → 「중점학교스포츠클럽(학교운동부)」로 용어 변경
- 라. 초·중·고등학교 학교운동부에서 학교 밖 스포츠클럽으로 전환 → 「지역형스포츠클럽」

3. 학생선수와 체육특기자 업무 처리

- 가. 체육특기자: 상급학교 진학 및 전·편입학 시 적용되는 용어(실적 및 추천)
- 나. 학생선수: 중점학교스포츠클럽(학교운동부)나 체육단체(대한체육회(가맹경기단체)에 등록(개별 포함)하여 선수로 활동하는 자
- 다. 학생선수가 상급학교에 진학 및 타 학교 전·편입학 시 체육특기자(실적 및 추천) 제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7조, 경상남도 전·편입학 및 재입학 업무 시행지침)에 의해 실시

4. 재정 지원

- 가. 중점학교스포츠클럽(학교운동부) 운영학교 지원(연 2회)
 - ※ 중점학교스포츠클럽(학교운동부) 소속 타 학교 학생선수 포함(단, 학교운동부지도자 지도 시)
- 나. 전국(소년·동계)체육대회 경남대표 선발 학생선수 대회 준비금(훈련비 등) 지원
- 다. 지역형스포츠클럽 운영비 지원
- 라. 중점학교스포츠클럽 학생취미반 ‘스포츠캠프’ 운영비 지원

1. 중점학교스포츠클럽 개요

가. 정의

학교운동부 종목의 소속 학생선수 뿐만 아니라 해당 종목에 취미를 가진 일반학생, 타 학교 학생도 포함한 경남 초·중학교 선진형 학교운동부의 형태(학생선수반 & 학생취미반)

나. 목적

- 1) 잠재적 학생선수의 저변 확대
- 2) 인권 및 학습권 보장을 통한 경쟁력 있는 학생선수 육성
- 3) 1인 1스포츠 활동 기회 제공을 통한 평생체육 기틀 마련
- 4) 학생선수 부상, 중도탈락 등에 대비한 전인적 역량 강화 방안 마련

2. 중점학교스포츠클럽 운영 형태

중점학교스포츠클럽	학생선수반	학생선수(타 학교 학생선수 포함)
	학생취미반	일반학생, 타 학교 일반학생

3. 중점학교스포츠클럽 운영 내용

항목	학생선수반	학생취미반
적용	◦ 중점학교스포츠클럽 운영 계획 적용	◦ 중점학교스포츠클럽 운영 계획 적용 ◦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매뉴얼 적용
운영	◦ 대한체육회(회원종목 단체) 학생선수로 등록 ◦ 학생선수들이 참가하는 도단위, 전국단위의 대회에 출전	◦ 나이스-학교스포츠클럽에 등록 ◦ 학교교육과정과 연계하여 1인 1기 프로그램 운영 권장 ◦ 각종 학교스포츠클럽대회 참가
	◦ 중점학교스포츠클럽 종목의 거점학교 역할에 따른 타 학교 학생 참여 가능 ◦ 참여 학생과 학부모의 의사에 따라 학생선수로 연계 가능	
진학	◦ 경상남도 체육특기자 선발에 관한 규칙 적용	◦ 일반학생 진학 업무 적용

4. 중점학교스포츠클럽 운영 주체의 역할

학교(장)	지도교사	학교운동부지도자
◦ 중점학교스포츠클럽 운영 경비 확보 ◦ 중점학교스포츠클럽 지도자 인건비 확보 ◦ 중점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 지원	◦ 중점학교스포츠클럽 운영 계획 수립 및 실행 ◦ 중점학교스포츠클럽의 '학생선수반'과 '학생취미반' 연계 육성 방안 마련 ◦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중점학교스포츠클럽 종목 활성화 방안 마련	◦ 기존 학교운동부 지도자 역할 수행 ◦ 중점학교스포츠클럽 조직운영

※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직무(학교운동부지도자 관리지침)

- ① 학생선수의 훈련지도 및 선수관리
- ② 학생선수 상담일지 기록 및 보관
- ③ 각종 대회 및 훈련 계획서 작성
- ④ 학생선수의 경기력 분석 및 훈련일지 작성
- ⑤ 훈련장비 및 훈련장 안전 관리
- ⑥ 학생선수 적정인원 확보
- ⑦ 학생 선수 각종 대회 출전 지원 및 인솔(단독 인솔 및 임시출납원 가능)
- ⑧ 훈련 및 각종 대회 출전 시 학생선수의 안전관리
- ⑨ 기타 학교운동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⑩ 겹직 신고(근로시간 외 겹직을 원할 경우, 업무 능률을 해치거나 업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 사용기관의 재산상 손실, 불명예스러운 영향 등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용기관의 장에게 겹직을 신고)

5. 중점학교스포츠클럽 학사 관리

구분	학생선수반	학생취미반
대회참가	중점학교스포츠클럽(종목) 운영 계획 (학생선수반 대회 참가 계획)	좌동(학생취미반 별도)
훈련참가	중점학교스포츠클럽(종목) 운영 계획 (학생선수반 훈련 참가 계획)	좌동(학생취미반 별도)
체육특기자 선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7조 적용	일반학생 전형 적용
최저학력제	학교체육 진흥법 제11조 적용	해당 없음
정규수업	이수 원칙	이수 원칙
학생관리	NEIS-체육-학교운동부관리-학생선수관리	NEIS-체육-학교스포츠클럽관리
출결 관리	NEIS 상의 학생선수 관리를 통해 [학적]과 연계 정확한 출결상황 관리	일반학생 NEIS 적용
전·편입학	경남교육청 전·편입학(체육특기자) 절차 적용	일반학생 전·편입학 절차 적용
e-School 활용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해당 없음

1. 지역형스포츠클럽 개요

가. 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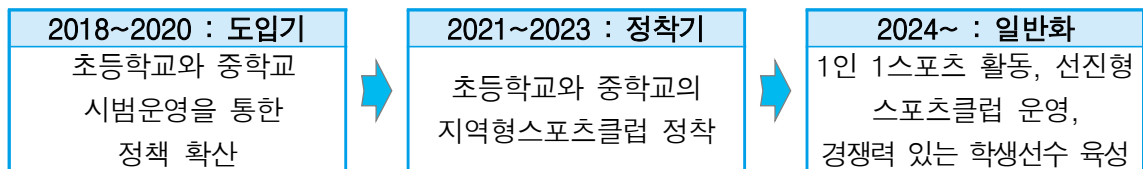
기존 학교운동부를 법인 형태로 전환하여 지역의 다양한 소속과 수준의 학생들이 학업과 운동을 병행할 수 있게 만든 선진형 스포츠클럽

나. 목적

- 1) 운동하는 모든 학생, 공부하는 학생선수 정책 지속 추진
- 2) 특화된 지역형스포츠클럽 지원을 통한 우수 학생선수 육성 지원
- 3) 지역의 다양한 소속과 수준의 학생들이 학업과 운동 병행 지원

2. 지역형스포츠클럽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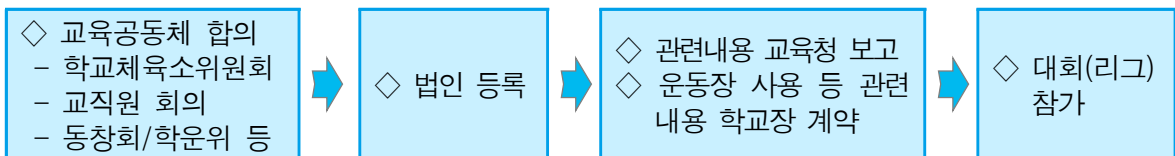
가. 추진 단계



나. 전환 단계

년도	학교운동부 종목	비고
1단계 [2018~2020]	축구, 야구	- 공공(지역)스포츠클럽과 협력한 가능 종목 - 개인 및 클럽으로 등록 가능한 종목 - 희망하는 종목은 우선 고려
2단계 [추후]	탁구, 볼링, 배드민턴, 농구, 배구 등	

3. 지역형스포츠클럽 전환 절차



4. 지역형스포츠클럽 지원

구분	내용
행정적 지원	학교 운동장 우선 사용권 부여, 점검 및 컨설팅(연중 1회), 관계자 간담회(수시) 시설 확충 및 사용 지원, 학교장 및 담당교사 지원
재정적 지원	운영비 지원, 체육 시설 확충 재원 확보 노력

5. 운영 주체별 역할

교육청 및 학생소속 학교(장)	◦ 클럽과 상호협력 관계 유지 ◦ 소속 학생선수 대회 참가 지원 ◦ 시설 사용 지원
거점학교 담당교사	◦ 소속 학생선수 대회 참가 업무 처리 ◦ 소속 학생선수 학사관리(결손수업 보충, 최저학력제(기초학력 보장 프로그램) 및 출결 관리) ◦ 지역형스포츠클럽 운영비 집행 ◦ 소속 학생선수 상급학교 진학업무 지원 ◦ 소속 학생선수 입상 시 중점학교스포츠클럽 담당교사와 동일 지원 ◦ 소속 학생선수 각종 교육 실시
지역형스포츠클럽 소속 학생선수 담당교사	◦ 소속 학생선수 대회 참가 업무 처리 ◦ 소속 학생선수 학사관리(결손수업 보충, 최저학력제(기초학력 보장 프로그램) 및 출결 관리) ◦ 소속 학생선수 상급학교 진학업무 지원 ◦ 소속 학생선수 입상 시 중점학교스포츠클럽 담당교사와 동일 지원 ◦ 소속 학생선수 각종 교육 실시
지역형스포츠클럽 담당자 (법인 담당자)	◦ 지역형스포츠클럽 조직·운영 ◦ 각종 훈련(대회) 참가 계획 수립 및 참가 지원 - 연간 운영 계획(훈련 및 대회 참가) 수립하여 학생선수가 소속된 학교에 제출(3월) - 훈련 및 대회 참가 1주일 전까지 학생선수 소속된 학교에 통보 및 참가 협조 요청 ◦ 출결 및 최저학력 관련 학생선수 소속학교와 긴밀한 연계 유지

6. 지역형스포츠클럽 학사 관리

구분	학생선수	비고
대회 참가	지역형스포츠클럽(종목) 운영 계획	학생선수 소속 학교와 업무 협의
훈련 참가	지역형스포츠클럽(종목) 운영 계획	
체육특기자 선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7조 적용	학생선수 소속 학교 및 교육청과 업무 협의
최저학력제	학교체육진흥법 제11조 적용	학생선수 소속학교 담당교사와 업무 협의
정규수업	이수 원칙	
학생 관리	NEIS 체육분야 학생선수 등록	학생선수 소속학교 담당교사 연계
출결 관리	체육분야 NEIS 기능개선 적용	학생선수 소속학교 담임교사
진학 및 전·편입학	경남교육청 전·편입학(체육특기자) 절차 적용	
e-School 활용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 학교체육진흥법 제11조 1항 및 2항 - 동법 시행규칙 제6조	학생선수 소속학교 담당교사와 연계

3-2

학생선수 맞춤형 중점학교스포츠클럽(학교운동부) 운영

● 목적 및 기본 방침

- 중점학교스포츠클럽(학교운동부) 투명성 확보로 신뢰도 제고
- 학생선수, 중점학교스포츠클럽(학교운동부)의 효율적 육성 및 관련 법령 준수
- 학생선수폭력 방지와 중점학교스포츠클럽(학교운동부)의 구조적 모순을 발전적으로 극복
- 중점학교스포츠클럽(학교운동부)의 교육적 관리를 강화하여 밝고 건강한 중점학교스포츠클럽(학교운동부) 풍토 조성
- 학생선수의 학습권 및 행복추구권 등 기본인권 보장을 통해 공부하는 학생 선수상을 정립하여 경쟁력 있는 체육영재 육성

3-2-1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진로교육 강화

1. 학생선수 관리

가. 학생선수 개념

학교운동부(중점학교스포츠클럽)에 소속되어 운동하는 학생이나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와 제34조에 따른 체육단체(대한체육회)에 등록되어 선수로 활동하는 학생을 말함(「학교체육진흥법」 제2조 4호)

나. 학생선수 현황 제출

- 1) (시기) 2026. 3월 중
- 2) (대상) 중점학교스포츠클럽(학교운동부) 소속 학생선수 및 대한체육회(회원종목단체)에 등록되어 선수로 활동하는 학생
- 3) (방법) <도교육청> 공문 발송 → <단위학교> 가정통신문 발송 및 학생선수 현황 파악
→ <지원청> 관내 학생선수 현황 취합(※ 고등학교→도교육청) → <도교육청> 도내 학생선수 현황 취합

중점학교스포츠클럽(학교운동부) 운영 학교	① 가정통신문 발송 ② 개인 학생선수가 있으면 개인 학생선수 현황과 중점학교스포츠클럽(학교운동부) 현황을 함께 제출
중점학교스포츠클럽(학교운동부) 미운영 학교	① 가정통신문 발송 ② 개인 학생선수가 있으면 개인 학생선수 현황과 타 학교 중점학교스포츠클럽(학교운동부)에 소속된 학생선수가 있으면 해당 학생 현황도 함께 제출

4) (단위학교 역할)

- 중점학교스포츠클럽(학교운동부) 운영 학교: 연간 운영 계획에 따라 운영
- 개인 학생선수 재적 학교: 담당교사 지정,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결손수업 보충학습, 출결, 최저학력제) 및 인권보호(각종 교육) 지원, 학생선수 대회 참가(학교장 확인서) 지원, 대회 참가 계획서 및 결과 보고서 취합, 학생선수 소속 클럽(학원)과의 협력체계 구축

다. 나이스를 활용한 중점학교스포츠클럽(학교운동부) 및 개인 학생선수 관리

- 1) 나이스의 '체육-학생선수관리' 탭에 개인 학생선수를 등록하여 출결 및 훈련일지 등을 효과적으로 관리

※ 중점학교스포츠클럽(학교운동부) 소속 학생선수 뿐만 아니라 개인 활동 학생선수도 학기 초 파악 후 등록 관리

※ [개인 학생선수 등록 방법] [체육]-[학생선수관리]-[등록]-[학생찾기]-[학생명 조회]-[개인 운동선수] 체크-[종목]-[세부종목]-[운동시작일자] 입력 후 [저장]

- 2) 나이스 상의 학생선수 관리를 통해 [학적]과 연계한 정확한 '출석인정결석 허용일수'의 시간 단위 누적·관리 가능

※ (초) 20일, (중) 35일, (고) 50일 이내에서 사용(단, 국가대표는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예외 처리 가능)

- 3) 학생선수 최저학력 관리를 위한 과목 등록 및 미도달 과목에 대한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 이수 현황 관리

※ '나이스-이스쿨' 시스템 간 학습 이력 등 정보 연계를 통한 자동 연계·관리 등 가능

- 4) 출전 및 훈련에 따른 수업 결손 발생 시 의무 이수 대상 e-school 학습의 이수 현황 확인·관리

2. 학생선수 출결 처리

❖ 학생선수 출석인정결석 허용일수

급별 허용일수	초	중	고
	20일	35일	50일

※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 의거 훈련·대회 참가 시 교외체험학습 등으로 출석인정 처리 불가 (반드시 학생선수 출석인정결석 허용일수를 이용하게 할 것)

- 가. 학생선수는 정규수업 이수를 원칙으로 하되, 학교장이 허가할 경우 '출석인정결석 허용일수' 범위 내에서 대회·훈련 참가

※ 단, 허용일수는 의무적 허가일수는 아니며 학생선수 안전, 교육과정 이수, 학습권 보장 등의 고려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결정하여 허가 가능

- 1) 학생선수가 국가대표(꿈나무, 청소년대표, 국가대표후보 포함)로서 국제대회 및 국가대표 훈련에 참가하는 경우, 전국(소년)체육대회(지역 예선 포함)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소속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학생선수의 학습권, 교육적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거쳐 초등학교 20일, 중학교 35일, 고등학교 50일에 포함하지 않고 예외 처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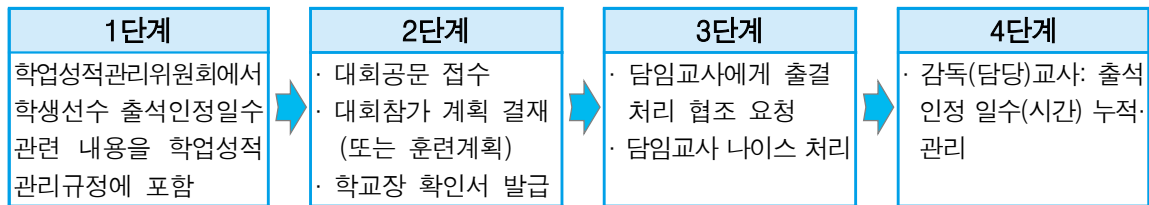
- ※ 대한체육회(대한장애인체육회)에서 인정하는 관련 공문(기간, 장소, 명단 명시 등)에 근거하여 ‘꿈나무, 청소년대표, 국가대표 후보’ 학생선수의 훈련도 출석인정결석 허용일수 예외 처리 가능
- ※ 초중학생 종합체육대회, 교육장배 체육대회 등 교육청 주관 대회에 참가하는 학생선수도 출석인정결석 허용일수 예외 처리 가능

※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는 수업 결손에 따른 출결처리 및 성적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 2) 국제대회 참가 등을 위해 국가대표로 선발되어 장기간 국내에서 훈련(진천선수촌 등)에 참가할 경우에는 훈련장소 인근 학교에 위탁(교환)교육을 통해 학생선수가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행정 처리 및 학습 여건 조성 지원

※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출결상황 - 위탁학생 출결처리 방법 - 국내교환학습]

- 3) 학생선수 출석인정결석 허용일수 사용 절차



나. 학습결손 예방을 위한 학생선수 출석인정제 출결관리 강화

- 1) 대회·훈련 참가를 위해 지각, 조퇴, 결과 조치 후 수업결손 누적 시수가 6시간이면 1일 사용한 것으로 처리
- 2) 대회·훈련 참가로 인한 지각, 조퇴, 결과 횟수 누적에서 실제 사용 수업 시수 단위로 합산하여 관리하며, 6시간 누적되면 출석인정결석 1일로 간주

※ (예시) 학생선수가 지각 4시간, 조퇴 4시간, 결과 4시간을 한 경우, 합산이 12시간이 되므로 허용일수에서 2일 제외함

※ ‘담당교사는 학생선수 출결 처리가 누가 기록될 수 있도록 나이스 입력·관리 철저

- 3)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 의거 훈련·대회 참가 시 교외체험학습 등으로 출석인정 처리 불가

3. 학생선수 정규수업 이수 후 훈련참가 원칙

가. 학생선수는 소속 학교의 모든 교육과정(수업, 학급활동, 학교행사 등)을 충실하게 이수한 후 훈련에 참가

나. 교내에 훈련장소가 없고 학생선수 안전관리 상 야간에 훈련이 어려운 종목으로 상시적 정규수업 이수 불가능할 경우, 보충학습 제공, 출결처리, 안전대책 등에 관한 사항 해당 교육(지원)청 의무적으로 보고하고, 정해진 허용일수 범위 내에서 실시

※ 초·중학교 → 교육지원청 / 고 → 도교육청

※ 정규수업 미이수 시 출석인정결석 허용일수(초 20일, 중 35일, 고 50일) 범위 내 차감

다. 학생선수가 수업결손이 발생할 경우,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을 위해 e-School 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보충학습을 의무적으로 제공

※ 보충학습은 수업결손에 대한 보충만 해당되는 내용으로 출석인정과는 관련 없음

※ 1일 1~2시간 수업결손은 1시간 수강, 3시간 이상 결손은 2시간 수강하여 1일 최대 2시간 의무 수강(e-School 수강 외 대면 수업 등의 다른 방법도 동일하게 적용)

4. 학생선수 최저학력제 적용 및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 이수 관리 철저

가. 최저학력제

- 1) 개념: 학교장이 학생선수 학기별 학력 기준 도달 여부 확인 및 미도달자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 제공·이수 관리, 미이수 시 출전 제한

※ 「학교체육 진흥법」 제11조(학교운동부 운영 등) 단, 학생선수가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 학교장은 경기대회 참가를 허용하여야 함

※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규칙 제6조의2(참가 제한 경기대회 등) : 학생선수 자격으로 참가하는 모든 경기대회 제한[(1학기 미도달) 9.1.~익년 2월 말일, (2학기 미도달) 익년 3.1.~8.31.]

- 2) 적용대상: 초(4~6학년)·중·고 학생선수

- 3) 적용교과

- 초·중 :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5과목)

- 고: 국어, 영어, 사회(3과목) ⇒ (예시) 국어 중 문학, 영어 중 공통영어1, 사회 중 통합사회2

※ 고등학교는 영어, 사회를 수학, 과학(전문교과)로 대체 가능

- 4) 최저학력 기준: 해당과목 학년 평균의 (초) 50%, (중) 40%, (고) 30%

- 5) 적용시험: 매 학기말 고사(이론시험+수행평가) ※ 연 2회 실시

※ 학교장은 최저학력 기준에 미도달한 학생선수 대상으로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e-School 등) 운영 및 참여 의무화

- ❖ (사전안내) 학년 초에 최저학력제 적용 세부과목(예시: 고등학교 국어 중 문학, 영어 중 공통영어1, 사회 중 통합사회2)을 선정(학교체육소위원회 / 학교장 내부결재)하고 이를 학생선수에게 반드시 안내
- ❖ (초등학교) 지필고사 미실시 학교일 경우 담임교사가 진단 및 단원 평가 결과 등의 자료를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이를 활용하여 심의 후 최저학력 도달 여부 결정
- ❖ (중학교) 자유학기제 운영 직후 다음 학기에는 최저학력 미적용
※ (예시) 작년 A중학교에서 1학년 2학기를 자유학기제로 운영한 경우, 올해 2학년 1학기에는 학생선수 대상 최저학력 미적용
- ❖ (고등학교) 학교장은 학교체육소위원회 심의 후 영어·사회 ⇨ 수학과과학으로 대체 가능하며, 특성화 고등학교의 경우 영어는 수학으로, 사회는 과학 또는 전문교과로 대체 가능
- ❖ (교과 대체) 교육과정 개편으로 해당교과가 개설되지 않을 경우 학교장이 학교체육소위원회 심의를 거쳐 타교과로 대체 가능
- ❖ 최저학력 미달 학생선수가 기초학력보장프로그램 미이수하면 ‘학교장 확인서’ 발급 불가

나.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

제11조(학교운동부 운영 등) ① 학교의 장은 학생선수가 일정 수준의 학력기준(이하 “최저학력”이라 한다)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경기대회의 참가를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학생선수가 제2항에 따른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에는 그 참가를 허용하여야 한다.

- 1) 학교장은 학기별 기말고사(지필고사+수행평가) 성적이 산출되면 학생선수의 최저학력 도달 여부를 파악
- 2) 미도달 학생선수에게 과목별 기초학력 보장 프로그램 운영 후 이수를 의무화하고 관련 사항은 내부 결재 처리 등을 적절히 조치

- ※ e-School 시스템 Run-up(기초학력보장프로그램)과정, 특별보충 수업, 온라인 학습, 과제물 부여 및 평가, 대학생 멘토링 등을 활용하여 과목별로 이수 가능
- ※ 최저학력기준 미도달의 경우 초·중학교(5교과)는 교과별로 12시간씩, 고등학교(3교과)는 20시간씩 운영 의무화(학교체육 진흥법 시행규칙 제6조 제3항)

다. 최저학력 기준 미도달 학생선수 경기대회 출전 제한 및 해제 방안

- 1) 최저학력 미도달 학생선수의 경기대회 출전 예외사항을 학생선수(학부모)에게 사전 안내
- 2) 기초학력 보장 프로그램 운영 시기 및 방법, 기초학력 보장 프로그램 이수 학생선수에게 출전 제한 및 해제 방안 등을 사전 안내

최저학력 미도달 학생선수의 경기대회 출전 제한 및 해제 방안

- ❖ 경기대회 출전 제한범위 및 예외사항
 - (출전 제한범위)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체육단체 등에서 개최하는 경기대회 출전 제한
 - (출전 제한 예외사항) 국제경기대회(올림픽, 월드컵, 아시안게임, 유니버시아드 대회 및 대한체육회장이 인정하는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국제대회에 한함)는 참가 가능
 - ※ 대한체육회 가맹 경기단체에 선수등록은 가능
- ❖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 운영 및 이수학생 출전제한 해제
 - (운영시기) 학기말 성적 공개 시점부터 방학종료 전까지
 - (운영방법) 학교 여건에 따라 e-School(Run-up 과정) 시스템 운영, 특별보충 수업, 온라인 학습, 과제물 부여 및 평가, 대학생 멘토링 등 활용
 - (결과처리) 단위학교는 학생선수 최저학력제 미도달 현황과 기초학력보장프로그램 이수에 관한 현황을 내부결재 처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참가제한 해제)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에는 참가를 허용해야 함

라.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책무성 강조

- 1) 학교장은 학생선수의 최저학력 도달 여부와 출석인정 결석 허용일수, 안전 확보 등을 고려 대회 및 훈련 참가 승인
- 2) 각종 대회를 개최하는 종목별 주관 경기단체에서는 학생선수가 학교장 확인서를 미제출하였을 경우 대회 참가 불허
- 3) 교육(지원)청 최저학력 미도달 현황 모니터링 및 관리·감독

마. 학생선수 최저학력제 적용 및 처리 철저

- 1) 학교장은 학기별 기말고사(지필고사+수행평가) 성적이 산출되면 학생선수의 최저학력 도달여부를 파악하고, 미도달 학생선수에게는 과목별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 운영 후 관련 사항은 내부결재 처리
- 2) 학생선수가 상급학교에 진학 후 상급학교에서 졸업한 학교로 최종학년(기)의 최저학력도달 여부 확인 요청 시 적극 협조

※ 초등학교 6학년 2학기, 중학교 3학년 2학기의 과목별 최저학력 도달 여부

바. 학생선수 학력 향상 레벨업 프로그램 운영 지원

- 1) (목적) 학교 자체 기초학력 보장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학생선수 기초학력 강화
- 2) (시기) 2026. 4월 중 / 공모
- 3) (운영) 교육과정 및 학생 개개인의 수준을 고려한 학교 자체 기초학력 보장 프로그램 운영
- 4) (대상) 학생선수

5.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을 위한 e-School 시스템 운영

가. e-School 시스템 운영 개요

- 1) 개념: 학생선수들이 대회출전 및 훈련참가로 인한 수업결손 및 최저학력 기준 미도달 교과 보충학습이 가능한 온라인 학습시스템
- 2) 대상: 초·중·고등학교 학생선수
- 3) 운영 강좌: 스포츠유 초등학교(총 30종), 방송통신중·고등학교(총 76종), 고등학교(총 161종) 특화 콘텐츠(총 20종), 사회정서역량 콘텐츠(총 24종)
- 4) 운영 기간
 - 1학기: 2026. 3. 16.(월) ~ 2026. 8. 3.(월)
 - 2학기: 2026. 8. 18.(화) ~ 2027. 1. 8.(금)
 - Run-up 여름방학(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 2026. 6. 29.(월) ~ 2026. 9. 4.(금)
 - Run-up 겨울방학(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 2026. 12. 1.(화) ~ 2027. 2. 19.(금)
- ※ 학기 중 과정과 방학 중 과정은 분리되어 운영되며, 학기 중 e-School을 수강한 학생이 학기말시험에서 기초학력에 미도달 시 기초학력 프로그램 운영하는 방학 중 Run-up 과정을 이수해야 함(학교체육 진흥법 제11조제1항)
- ※ 초·중 학생선수가 최저학력에 미도달할 경우에 기초학력보장프로그램 이수 후 대회 참가 가능
- ※ 초 6학년 2학기 학기말 성적과 중 3학년 2학기 학기말 성적이 최저학력에 미도달할 시, 런업 과정을 통해 이수 필수. 이 경우, 중학교와 고등학교 진급 이후 대회 출전 가능
- 5) 운영 시간: 학생선수의 자발적인 학습 참여 유도 및 대리수강을 방지하여 e-School이 학력 증진에 실제적 도움이 되도록 운영

e-School 수강 시간			
1, 2학기			방학 중(Run-up)
평일	아침시간	06:00 ~ 09:00	06:00 ~ 다음날 02:00
	점심시간	11:30 ~ 13:30	
	오후 및 저녁시간	15:00 ~ 02:00	
주말 및 공휴일		06:00 ~ 다음날 02:00	

※ 초등은 학기와 방학 중에 야간 10시까지만 운영

- 6) 학습 내역 관리: 학생선수가 스스로 학습에 참여하고, 실제 학력 증진에 도움이 되도록 학습 노트 작성 등을 통해 내실 있게 수강
 - ※ 이스쿨시스템 - 로그인 - 나의 강의실 - 나의 학습노트 메뉴 이용
- 7) 나이스-이스쿨 시스템 연계: 대회·훈련 참가로 인한 수업 결손 발생 시 의무 이수 대상 보충학습 정보의 시스템 연계를 통한 누적·관리
 - ※ [보충학습] 나이스 - 체육 - 학생선수관리 - 학생선수출결관리 - 수업결손 보충 내역
 - ※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 나이스 - 체육 - 학교운동부관리 - 최저학력제 관리 -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이수 - e-School 연계 탭 내역관리

6. 학생선수 대상 최소 성취수준 보장 지도 운영

가. 학점이수 인정기준(학업성취율 40% 이상 및 과목 출석률 2/3 이상) 및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이수기준(총 보충지도 운영 시수의 2/3 이상 참여) 적용

나. (예방지도) 학기 초, 과목 이수기준 미도달 예상 학생선수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상시 학습(e-School), 보충과제 부여, 학습멘토링, 정서적 지원 프로그램 등 방법 활용

다. (보충지도) 과목 이수기준 미도달 학생선수를 대상으로, 1학점당 5시수를 적용하여 해당 시수 지도

※ 과목 이수 기준에 미도달한 학생선수가 최저학력제에도 미도달한 경우, 최저학력제에서 이수해야 하는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e-School의 Run-up과정)의 해당 과목 시수를 보충지도 시수로 인정 가능

예 '국어(4학점)' 과목에서 학점 이수기준과 최저학력 기준에 모두 미도달한 경우,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e-School의 Run-up과정) 20시간을 보충지도 시수로 인정 가능

학생선수 대상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운영 시 참고사항

❖ 학생선수 대상의 예방지도와 보충지도 연계 비율, 정서지원 프로그램 운영 비율, 대면지도 포함 여부 등 별도의 기준을 적용하여 운영 가능

* 별도 적용의 구체적인 사항은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

7. 고입 체육특기자 선발 시 내신 성적 반영

가. 경기대회 입상 실적, 실기능력 위주 선발로 인한 학생선수 학업 소홀

나. 대회실적 50%, 내신성적 50% 반영

8. 학생선수 진로·진학 지원체계 구축 확대

가. 진로상담 멘토풀: 학생선수 대상 맞춤형 진로상담 지원을 위해 중·고 학교급별 진로상담 멘토풀을 구축하고, 연차적으로 확대 추진

※ ('21) 12명 → ('22) 34명 → ('23) 50명 → ('24) 75명 → ('25) 85명 → ('26) 100명 예정

나. 온라인 진로상담: 학생선수 진로탐색, 진로·진학상담 지원을 위하여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비대면 진로멘토 상담을 확대 운영

학생선수 진로·진학 상담 프로그램 개요

구분	1:1 온라인 진로·진학 상담	찾아가는 진로·진학 상담
대상	중·고 학생선수, 학부모	전국 중·고 학교운동부(체육고 포함) 및 체대 입시 희망 학생 등
내용	체육분야 진로·직업 안내 체육계열 전형 분석 및 진로 사례 소개	학생선수 진로·진학 특강, 체육계열 전형 분석 및 지원전략 등
방법	(비대면) 1:1 온라인 상담	(대면) 모듈별 또는 개별 상담
일정	상시 상담 / 주말 집중 상담 운영	시도별 일정 고려하여 진행

1) (1:1 온라인 진로상담) 중·고 학생선수, 학부모 대상으로 맞춤형 진로 탐색 및 설계, 진학 상담 등에 관한 개인별 상담 실시

2) (찾아가는 진로상담) 권역별로 직접 방문하여 대면 진로상담 실시하여 정보 제공

1. 학생선수, 학교운동부지도자 법적 의무교육 운영

교육(연수)명	대상	교육 시간	법적 근거
스포츠분야 인권교육	학생선수 학교운동부지도자	학기 1회(연 2회) (1회 1시간 이상)	학교체육진흥법 시행령 제3조의3
도핑방지교육	학생선수 학교운동부지도자	연 1회 이상	학교체육진흥법 시행령 제3조의2
(성)폭력 예방교육	학생선수 학교운동부지도자	학기 1회(연 2회) (1회 1시간 이상)	학교폭력예방법 제15조 동법 시행령 제17조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	학생선수 학교운동부지도자	1시간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30조의4
체육지도자 재교육	학교운동부지도자	격년(6시간)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6

2. 학부모 교육, 학생선수 면(상)담 의무화

가. [학부모] 중점학교스포츠클럽(학교운동부) 운영 관련 교육 의무화

- 1)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 보호, 학교운동부 운영 투명성 제고, 입학비리 근절, 학부모 부담금 학교회계 편입 등에 대한 교육(집합교육, 찾아가는 현장교육 등)
- 2) 학기별 1회(연 2회) 이상 실시(집합, 온라인 연수 등)

나. 학생선수 면(상)담 의무화

- 1) 담임 및 중점학교스포츠클럽(학교운동부) 담당교사, 상담·보건교사 등을 통해 학생선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고민·애로사항에 대한 월 1회 이상 상담 의무적 실시
※ 학생선수 교우관계, 경기력 향상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 진로·진학 등에 관한 개인별 상담 내용을 누가 기록 하여 관리
- 2) 학생선수·학교장, 학교운동부지도자·학교장 간담회(연 1회 이상) 운영

3. 학생선수 폭력예방 및 대응 강화

가. 학생선수 폭력피해 실태조사

- 1) (대상) 중점학교스포츠클럽(학교운동부) 소속 또는 개인 활동 학생선수
- 2) (시기) 2026. 6~9월 중 실시
※ 학폭법에 따라 매년 실시하는 전체 학생 대상 폭력피해 실태조사와의 연계·통합 추진('27.~)
- 3) (방법) 온라인 설문조사
※ 비밀보장을 위한 개별 조사 환경 조성
- 4) (내용) 학생선수 (성)폭력, 언어 및 사이버 폭력 피해, 목격 경험 등

나. 집중 신고기간 운영

- 1) (대상) 중점학교스포츠클럽(학교운동부) 소속 또는 개인 활동 학생선수
- 2) (시기) 학기 초, 전지훈련 집중 기간 등

3) (방법) 교육부 온라인 신고센터

※ 교육부 누리집 - 국민 참여·민원 - 신고·고충 처리 - 학생선수 폭력피해 신고센터

4) (내용) 학부모 등 관련자 대상 집중기간 운영 및 후속 조치

다. 가해 학생선수 조치 강화를 통한 학생선수 인권보호 및 폭력 예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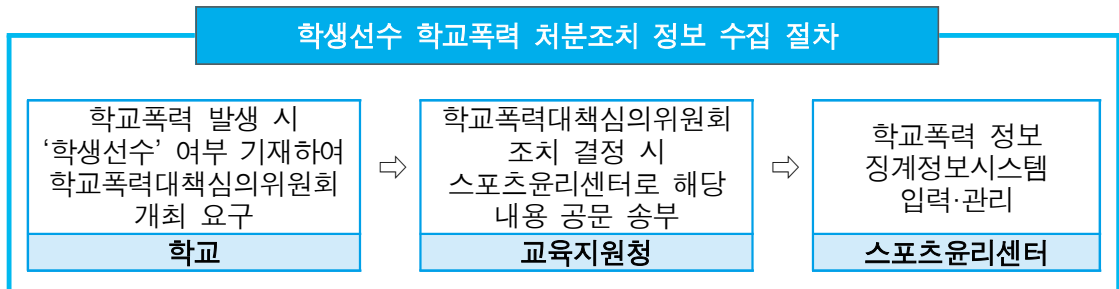
- 1) (대회 출전 등 경기인 자격 제한) 학교폭력 가해자로 조치 결정을 받은 학생선수에 대한 일정 기간 대회 참가 및 선수등록 제한 조치('25.10월 개정)

대회 출전 등 경기인 자격 제한 기간				
학교폭력 가해자 사안 조치 결과		출전 및 선수등록 제한		
		구분	개정 (‘25.10월~)	기존 (‘21.11월~)
1호(서면사과), 2호(접촉·보복금지)		출전 제한	3개월	3개월
3호(교내봉사)			5개월	
4호(사회봉사), 5호(특별교육)			8개월	6개월
6호(출석정지), 7호(학급교체)			10개월	
8호(전학)			12개월	12개월
9호(퇴학)	성추행, 성희롱 폭력 등 강간, 유사강간 및 이에 준하는 성폭력	선수등록 금지	5년	5년
			10년	10년

※ 대한체육회 경기인 등록 규정 개정('25.10.1.), ※ 조치 확정일이 '25.10.1. 이후 사안부터 적용

※ (가해자 조치 결과 중복 등 적용 방법) 과중한 조치 적용 및 제한 기간 중 별도 사안으로 추가 조치를 받을 시, 건별로 제한 기간을 별도로 적용

- 2) (징계정보 연계) 학생선수의 학교폭력 처분조치 정보를 징계정보시스템에 연계·관리 (10년간)하여 체육회 등의 장이 채용 시 징계 이력 확인 추진('22.8.11.~)



4. 학교운동부지도자 재교육 이수 의무화 및 전문성 연수 운영

가. 학교운동부지도자 재교육 이수

- 1) (근거)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6,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2
- 2) (대상) 체육지도자 자격증을 소지하고 학교나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 지도 업무에 종사 중인 사람

※ 체육지도자 자격증: (1,2급)전문스포츠지도사, (1,2급)생활스포츠지도사, (1,2급)장애인스포츠지도사, 유소년스포츠지도사, 노인스포츠지도사, 건강운동관리사

- 3) (교육 주기/시간) 격년제(2년) / 6시간 이수 의무화
- 4) (교육 방법) 온라인(스포츠윤리 런(learn)) 교육 수강 및 대면 교육 이수 등
- 5) (미이수자 제재) 1차 서면경고, 2차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

나. 학교운동부지도자 전문성 증진 연수

- 1) (근거) 학교체육 진흥법 제12조
- 2) (대상) 학교운동부지도자
- 3) (시기) 도교육청 주관: 1학기, 교육지원청 주관: 2학기
- 4) (교육방법) 대면 교육 이수
- 5) (내용)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자질 향상 및 전문성 강화, 중점학교스포츠클럽(학교운동부)의 교육적 운영 등

5. 학생선수 인권보호를 위한 상시 합숙훈련 금지

가. 학교장은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신체적·정서적 발달을 위하여 학기 중 상시 합숙 훈련이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

※ 초·중·고등학교 중점학교스포츠클럽(학교운동부) 합숙소 운영 폐지

나. 원거리에서 통학하는 학생선수를 위한 기숙사 운영은 가능하며, 안전대책 수립과 학습 여건 등을 완비하여 운영(고등학교)

※ 초·중·고등학교는 근거리 배정 원칙으로 원거리 통학 사유가 발생할 수 없어 기숙사 미운영

1) 학습시설(책상·의자·컴퓨터), 휴게실, 욕실, 침실, 화장실, 세탁실, 식당, 주방 등을 갖추고 소방 관련 법령 준수

2)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생선수 기숙사 전담 교직원 근무

※ 여학생 학생선수 기숙사의 경우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여성 교직원 근무

3) 학교장은 학생선수의 기숙사 생활에 따른 안전사고 및 (성)폭력 예방 교육 실시 의무화

4) 학생선수의 통학거리(대중교통 이용 1시간 초과 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단순 숙식 제공과 주거 생활만 하는 합숙소 형태의 기숙사 운영 불가

※ 교육(지원)청에서는 원거리를 사유로 기숙사를 운영하는 경우 불법 전·출입 여부 사실 확인

※ [초등 합숙소 폐지] 국가인권위원회 권고('07.12월/'20.6월) / [자체 계획수립·적용에 따른 합숙소 폐지] 시도교육청 체육 담당 과장('16.8.8.) 및 장학관 협의회('16.12.27.)의 결정 사항

5) 기숙사 운영 요건을 갖춘 학교는 교육청에서 점검·승인 후 운영

6) 중점학교스포츠클럽(학교운동부) 기숙사 중점 점검 사항

중점학교스포츠클럽(학교운동부) 기숙사 중점 점검 사항

- ❖ 학교운동부 기숙사 운영 계획(소방 훈련 등 포함)
- ❖ 원거리 거주 학생선수 기숙사 입사
- ❖ 건축물대장 상 용도
- ❖ 학교 (성)폭력 및 인권교육 실시
- ❖ 각종 안전시설(화재감지기, 대피로, 소화기, 스프링클러, 비상구 등) 설치 현황
- ❖ 기숙사비 등 수익자 부담경비 학교회계 편입
- ❖ 기숙사 침실 등 시설물 안전관리

※ (주관: 도교육청) 학교운동부 운영 기숙사 운영 미비점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개선을 권고하되, 미이행 시 장학, 감사 실시 및 학교운동부 기숙사 폐쇄 등 단계적이고 적극적인 조치 (예: 실당 6인 초과 운영, 근거리 학생선수 입사 허용, 상시 합숙, 안전관리 및 안전시설 미흡, 전담 교직원 미배치 등)

※ 학생선수의 전인적 발달을 고려하여 일반학생이 사용하는 학교기숙사와 통합 추진

6. 학생선수 및 학교운동부지도자 휴식권 보장

가. 학생선수 체력 수준, 운동 여건 및 종목별 특성, 운동 강도 등을 고려하여 적정 시간 동안 훈련하고 과도한 훈련 지양

나. 학생선수 보호를 위해 훈련과 휴식의 균형을 유지 및 대회 참가 후에는 최소 1일의 훈련 없는 날 운영 등 권장

※ ‘훈련없는 날’ 휴식시간 부여 시에도 정규수업은 반드시 이수

다. 주말과 야간에 과도한 학생선수 지도는 지양하고, 휴식 여건 조정

7. 혹서(한)기 훈련 안전대책 수립 및 훈련시간 최소화

가. 폭염(한파) 특보 발령 시 야외 체육활동 자제(주의보) 및 금지(경보)

구분	주의보(자제)	경보(금지)
폭염	일 최고 체감온도 33℃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 예상	일 최고 체감기온 35℃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 예상
한파	①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0℃ 이상 하강하여 3℃ 이하이고 평년값보다 3℃가 낮을 것으로 예상 ② -12℃ 이하가 2일 이상 지속 예상	①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5℃ 이상 하강하여 3℃ 이하이고 평년값보다 3℃가 낮을 것으로 예상 ② -15℃ 이하가 2일 이상 지속 예상

나. 학생선수 보호 안전 대책

- 1) 기온을 고려하여 가급적 실내 활용하되, 여건에 따라 선택적 운영
- 2) 학생선수가 혹서(한) 환경에 장시간 노출되지 않도록 훈련시간 조절
- 3) 체육 시설물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그에 따른 안전조치 후 사용
- 4) 위험요소 사전제거, 충분한 영양 및 수분 섭취 조치
- 5) 학생선수 개인별 신체적 특성을 고려하여 충분한 휴식 제공
- 6) 과도하고 무리한 훈련 진행 금지 및 임장지도와 관리 감독 철저
- 7) 훈련 및 대회 참가 전후 학생선수 건강 상태 확인을 통해 참가 여부 결정

1. 중점학교스포츠클럽(학교운동부) 운영 계획 수립 및 세액 공제

가. (계획 수립) 단위학교에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운동부 운영 계획을 별도 수립 하거나, 학교교육계획서에 포함시켜 수립하고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후 시행

※ (관련법령) 초·중등교육법 제32조 제1항 12호(학교운동부의 구성·운영)

※ 주요 내용: 학생선수·학교운동부지도자 등 일반현황, 학교운동부 운영 예산 확보·집행,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최저학력 기준 적용 포함) 및 인권 보호, 전지훈련·대회 참가, 각종 교육 및 연수 이수, 안전대책(방역 포함), 학부모 후원금(부담금) 회계처리 준수 등에 관한 사항

나. (세액 공제) 중점학교스포츠클럽(학교운동부) 운영 관련하여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수익자 부담경비)는 학교회계에 편입해야 하며, 교육비 세액공제 처리 가능

※ (세액 공제한도) 초·중·고등학생인 경우에는 1명당 연 300만원 한도

※ 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제3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6(교육비 세액 공제)

※ 처리 절차

단계	절차	내용
1	학부모 요구	학부모회에서 협의를 거쳐 학교운동부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을 학부모 부담금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학교 측에 요구
2	중점학교스포츠클럽(학교운동부) 운영계획 수립	중점학교스포츠클럽(학교운동부)는 방과 후 과정(방과 후 학교 포함) 등에 포함하여 운영되도록 계획 수립 후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3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초·중등교육법 제32조에 따라 중점학교스포츠클럽(학교운동부)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 ※ 2017년 국세청에서는 학교운동부 운영과 관련된 세액공제 대상은 반드시 '방과 후 과정' 등으로 학운위 심의를 거친 것만 인정하고 있음
4	학교회계 편입	중점학교스포츠클럽(학교운동부) 운영 관련 학부모 부담 교육 경비(수익자 부담경비)는 학교회계로 편입 시켜 운영
5	교육비 납입 증명서 발급	세액 공제 처리를 위하여 학부모 교육경비(수익자 부담경비) 납부에 대한 「교육비납입증명서*」 발급 가능 ▷ 구분 란에 「방과 후 학교 등의 수업료」 기입 ※ 관계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 6(교육비 세액공제)

다. 중점학교스포츠클럽(학교운동부) 운영 경비를 학부모 부담금으로 충당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준수하여 집행하여야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않음

2. 중점학교스포츠클럽(학교운동부) 운영 경비 집행 투명성 확보

가. 학부모 부담금(후원금) 학교회계 편입

1) (관련근거) 학교체육 진흥법 제11조 제5항(학교회계 편입), 학교발전기금 부당 조성(불법 찬조금) 근절 대책 알림(정책기획관-3262, 2023.3.7.)

2) (학교회계 편입)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수익자 부담경비)는 학교회계에 편입하고, 관련 회계 지침에 따라 내부결재 후 법인카드로 집행

3) (학교발전기금) 중점학교스포츠클럽(학교운동부)와 관련하여 기탁된 학교발전기금은 학교회계에 전출하여 집행

※ 지도자(코치 포함) 인건비(수당 포함), 출전비 등 교직원 관련 비용은 조성·운영 불가

※ 학교발전기금의 학교회계 전출 방법 및 절차(국·공·사립학교 모두 적용)

전출할 사업(사업비 포함) 계획 수립 →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 → 학교회계로 전출
→ 학교회계 편입(학교회계 예산에 편성) → 학교장 집행 → 학교운영위원회에 서면보고
(집행내역)

- 4) 학부모 부담금을 학교회계에 편입하지 않고, 학부모회에서 직접 학교운동부지도자 인건비 등을 집행할 경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어 관련자(학부모와 학교운동부지도자) 처벌

나. 각종 대회 참가 및 전지훈련 비용 공개 의무화

- 1) 중점학교스포츠클럽(학교운동부)의 대회 및 훈련 참가에 따른 예산 집행 결과를 학교 누리집에 게시하여 투명성 확보
- 2) 도교육청에서는 누리집에 공개시스템 구축 추진 예정

3. 중점학교스포츠클럽(학교운동부) 학부모 부담금(후원금) 최소화

가. 학교운동부 학부모 전체 의견을 수렴하여 적절한 부담금을 정하고, 학교에서는 과도한 부담금이 책정되지 않도록 학부모(회)에게 사전 안내

※ 학교장은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범위에서 학교운동부지도자 인건비를 책정하고 학부모 부담금이 최소화되도록 계약체결 권장

※ 대회입상실적에 따른 승리 수당은 일체 편성 금지

※ 전지훈련 기간도 연간 30일 범위 내 실시하여 과도한 부담 및 학습권 침해 발생 예방

나. 학교운동부 규모와 학생선수 수, 종목별 특성, 재정 여건 등을 고려, 학교운동부지도자 인원 적정화를 통해 학부모 부담금 최소화

※ 한 종목(단체종목 등)에 많은 학교운동부지도자를 운영할 경우, 그 비용이 학부모에게 전가되므로 학교별·종목별 학교운동부지도자 인원을 적정화하여 운영

다. 과도한 부담금(회비) 발생으로 주요 인기종목 학부모로부터 육성·지원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하는 민원 빈발

민원 사례

- ❖사례1. 야구, 축구 종목 학부모의 경우 월 100만원 이상을 부담하면서도, 자녀의 공정한 대회 참가 기회가 이루어지지 않고, 비공식적인 부담금 추가 요구에 대한 민원
- ❖사례2. 학부모 후원회 집행부 자녀 위주의 대회 참가 기회 부여, 상급학교 진학 영향력 행사 명분으로 학교운동부지도자가 별도 활동비 요구, 예산 집행의 불투명성 등에 관한 민원
- ❖사례3. 학부모의 과도한 부담금 발생으로 학생선수 육성을 포기하고, 알고 있던 과거 비위행위 제보와 함께 관련자 처벌을 요구하는 민원 제기

1. 중점학교스포츠클럽(학교운동부) 정기점검 실시

가. 목적: 준수사항 등 사전 안내, 점검을 통한 미비점 및 문제점 보완·개선

나. 대상: 중점학교스포츠클럽(학교운동부) 운영학교

※ 방문 학교에 학교운동부 기숙사가 있으면 점검 병행

다. 횟수/방법: 연 1회 이상 / 교육(지원)청 현장 방문 점검

라. 기간: 2026. 6 ~ 9월

마. 결과 보고: 2026. 9월 중

※ 교육부에서 공문 시행하여 점검 사항(서식 포함)을 별도 안내할 예정

바. 중점 점검사항

- ❖ 중점학교스포츠클럽(학교운동부)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계획 수립(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및 내부결재)
- ❖ 대회 및 훈련 참가 허용일수 준수(초-20일, 중-35일, 고-50일)
- ❖ 정규수업 이수 후 훈련 참가
- ❖ 훈련 및 대회 참가로 인한 결손 수업 보충과정 운영
- ❖ 최저학력제 적용 여부 확인, 기초학력 보장 프로그램 제공·운영
- ❖ e-School 시스템 활용
- ❖ 훈련일지 작성 및 확인
- ❖ 학생선수 대상 각종 법적 의무교육 이수 및 면(상)담 활동(월 1회)
- ❖ 해외전지훈련 실시 절차 준수
- ❖ 대회 참가 및 전지훈련 비용 공개
- ❖ 학부모 부담금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및 학교회계 편입, 공개 및 개별 통보
- ❖ 학교운동부지도자 재교육 이수 및 각종 법적 의무교육 이수
 - ※ (연수주관) 학교운동부지도자 연수(재교육)→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분야 인권교육(학교체육진흥법)·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국민체육진흥법)→교육(지원)청, 도핑방지교육(학교체육진흥법)·(성)폭력 예방교육(학교폭력예방법)→학교
- ❖ 학교운동부지도자 채용 표준계약서 작성 여부
- ❖ 불법적인 합숙소 운영 여부, 원거리 학생을 위한 기숙사 운영 현황(안전관리, 사감 운영 등)
- ❖ 학생선수 인권·학습권 침해 현황 및 보호를 위한 조치 등
- ❖ 학교운동부 및 종목 특성 등을 반영한 안전대책 수립의 적절성 여부

사. 사후 조치

- 1) 교육(지원)청에서 사안의 심각성 등을 판단하여 시정 조치하되, 중대한 사안인 경우에는 감사 실시 등 적극적인 조치 이행
- 2) 학교운동부지도자의 학생선수 대상 (성)폭력 등 인권침해 학습권 박탈, 폭력, 금품·향응 수수 입학비리, 상대 의사에 반한 영향력(갑질) 행사 시 해당 교육공무직 인사위원회를 통해 징계 결정
- 3) 징계결과는 도교육청으로 비위행위 사안 종결 결과 보고서 제출, 도교육청에서는 학교운동부지도자 비위행위 처리 절차에 따라 교육부와 대한(장애인)체육회로 보고 및 통보

2. 학교운동부지도자 채용 안내

- 가. 채용 대상: 학교운동부지도자는 반드시 '체육지도자' 자격증 소지자에 한하여 채용
 나. 채용 절차

학교운동부지도자 채용 관련 절차

- ❖ 학교운동부지도자 채용 지원자는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조회 동의서, 징계사실유무 발급 동의서 제출 ⇨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 조회, 징계사실 유무 확인서 발급 신청(스포츠윤리센터 발급) ⇨ 채용제한 사유에 해당여부 확인 후 계약
- ❖ (관련법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4 참고,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13 ①, ④
- ❖ 「국민체육진흥법」 개정(2021.6.9. 시행)에 따라, 체육회 등의 장은 체육지도자 채용 시 징계정보시스템 발급 증명서를 통한 징계 이력 확인 필수

다. 채용 시 제출 서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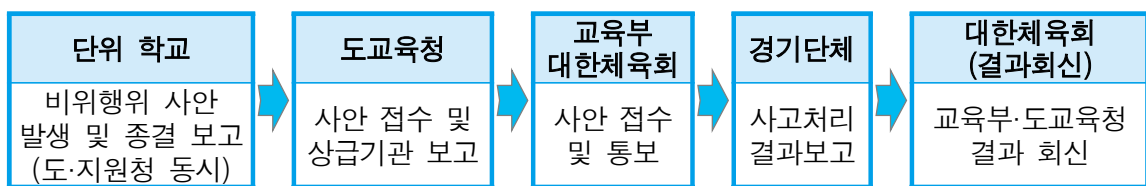
제출 서류

- ❖ 주민등록등본 1부
- ❖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 이력서(사진 포함) 1부
- ❖ 징계사실유무 확인서 1부 (스포츠윤리센터 발급)
- ❖ 최종 학력 증명서 1부
- ❖ 계약 체결 후 neis 인사기록 시 “근로계약서” 등재(교감) → 채용권자: 교육감(나이스 등록 시 채용권자는 학교장으로 기재)
- ❖ 건강진단서 1부
- ❖ 경기실적 증명서 1부
- ❖ 체육지도자 자격증 사본 1부
- ❖ 개인정보이용·제공동의서 (비리 발생 시 활용)
- ❖ 성범죄 경력 조회/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회신서 각 1부

※ 징계사실유무 확인서 발급 지연 시, 서약서(채용대상자 작성) 우선 제출

3. 학교운동부지도자 비위행위 처리 절차

가. 사안보고 및 통보



나. 사안처리 결과 회신: 시·도체육회 및 경기단체 ⇨ 대한체육회 ⇨ 도교육청(교육부) ⇨ 학교

※ 대한체육회는 사안접수 후 90일 내 처리결과를 요청기관(교육청)과 교육부에 동시 회신

다. 기관별 역할

- 1) 학교: 육하원칙에 따라 별도 서식(부록 참고)을 활용하여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에 비위행위 사안 발생 보고 및 사안 종결 보고
- 2) 도교육청: 학교로부터 접수된 사안을 검토 후 대한체육회에 통보하고, 처리결과 회신 요청

※ 공문 시행 시 수신처에 교육부 포함

4. 체육특기자 선발 및 전·편입학 관리

가. 체육특기자 선발

- 1) 경상남도 고등학교 입학 전형 기본 계획(체육특기자 전형) 및 경상남도 체육특기자 선발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선발
- 2) 평준화(비평준화)의 해당 지역(교육지원청 기준) 해당 학년 입학 정원의 3% 이내
- 3) 학교별 체육영재육성(교기) 지정종목(교육감 승인을 받은 종목)에 한함
- 4) 입상실적 체육특기자와 추천 체육특기자로 구분하여 선발
- 5) 경상남도체육특기자선발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선발
(학교장 전형 학교는 학교 자체 체육특기자선발위원회에서 심의·선발함)
- 6) 고등학교 입학 전형을 위한 체육특기자 선발 성적 반영

전형 영역	내신	실적	면접	계
입상실적 체육특기자	100점(50%)	100점(50%)		200점(100%)
추천 체육특기자	100점(50%)		100점(50%)	200점(100%)

- 7) 평준화지역의 종목별 신입생 정원(인원 배정)을 초과할 경우 전형 영역별 점수의 상위자 선발
- 8) 정원 (※ 평준화지역(창원, 진주, 김해, 거제) 고입 야구 및 축구만 해당)

종목	신입생 정원	전체 선수정원
축구	15명	45명
야구	15명	45명

- 9) 경상남도체육특기자선발 전형 공고 시 체육특기자 배정기준 안내 등 입시 상세 정보 제공(초등학교 학생선수는 교육지원청별 입시전형에 따름)
- 10) 추천 체육특기자 선발 방법(고등학교 재학생)
 - 가) 경상남도교육청 선발: 3월, 6월, 9월 추천특기자 심사
 - 나) 학교 자체 선발 : 학교체육소위원회 통해 선발
 - 학교 팀 유지를 위한 무리한 선수 선발 금지
 - 운동을 하지 않는 일반 학생의 학생선수 등록 등의 무리한 선수선발 금지
- 11) 체육특기자 관리
 - 가) 체육특기자의 유급생 관리 철저 : 학교장의 책무성 강조
 - 나) 대한체육회(경기종목 단체별) 선수등록 규정 사전 고지
 - 학생선수 학부모 동의를 거쳐 경기단체에 선수등록 신청
 - 학부모와 학생선수에게 선수등록 절차 및 준수사항을 사전 고지하고, 전학(이적) 후 선수등록 방법 등에 대한 안내를 통해 민원 발생 최소화
 - 다) 일반학교 소속 학생이 학생선수 등록 요청 시 학교장은 적극적으로 지원

12) 경상남도체육특기자선발위원회 구성·운영

13) 고입 체육특기자 관련 구비 서류

구비서류	입학		비고
	실적	추천	
체육특기자 심사원서	○	○	실적특기자, 추천특기자
증빙서류(상장 사본)	○		원본대조필, 단체일 경우 엔트리명단 기입
석차연명부	○	○	해당 학생부분만 출력
배정희망학교장 동의서		○	
재적학교장 추천서		○	

나. 체육특기자 전·편입학 관리

- 1) 해당 학교 지정 종목의 결원 범위 내에서 특기 종목별로 배정(단, 종목별 정원을 초과하여 배정할 수 없음)
- 2) 도내에서 체육특기자는 거주지 이전 없이 전·입학 신청 가능
- 3) 정상적인 체육특기자 전·출입 시 학교장 동의서 발급
 - 가) 학교장은 학생 주소 이전 등 정상적인 전학 사유 발생 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였을 경우 반드시 동의서 발급
 - 나) 체육특기자 전·출입 시 학교장은 실제 거주 여부를 파악하여 현행법(주민등록법)을 준수하도록 확인·감독
- 4) 선수활동을 규제 당한 유급생 중 기 입상실적이 있는 자는 실적 체육특기자로, 입상실적이 없는 자는 교육감이 적성을 검토하여 추천 체육특기자로 상급학교에 진학 가능
- 5) 각급 학교에서는 학생을 선수로 선발·편입시킬 경우, 소속의 변경 원인을 사전 억제하는 등 소속 학교장 책임 하에 관계자들과 충분히 협의한 후 결정
- 6) 타·시도 전입학 학생 (※ 경상남도교육청 전·편입학 업무 시행 지침 참고)
 - 가) 타·시도 전입학 학생은 반드시 가족 전체 주소 이전 필수(단독세대 구성)
 - 나) 부모 중 한쪽만 주소 이전 시 반드시 구비서류 첨부
- 7) 체육특기자가 당해 학교에 특례 입학(전·입학) 후 고의적으로 선수활동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타 학교(관외) 일반 학생으로 전·편입학하게 할 수 있음(중도 포기를 최대한 억제토록 하며, 특기자 관리에 대한 모든 사항은 학교장이 결정)
- 8) 중학교의 체육특기자 선발 및 학교 배정은 교육지원청 자체 체육특기자 선발위원회에서 선발·배정(자체 배정원칙 수립)
- 9) 체육특기자 전·입학 업무 처리 절차

[체육특기자의 전·편입학 절차]

전입학교에서 체육예술건강과로 우선배정 요청(공문) → 체육특기자심사위원회에서 심의(추천특기자만 해당) → 체육예술건강과장 승인 → 중등교육과 배정 검토 요청(체육예술건강과) → 중등교육과에서 확인 후 배정

실적체육특기자 업무 처리	추천체육특기자 업무 처리
◆ 실적체육특기자를 받을 학교에서 • 실적체육특기자 심사원서 •학교장 전입학 동의서 •재적교 이적 동의서 •경기실적증명서 [협회 발행] •주민등록등본 등을 구비하여 공문으로 우선 배정 요청 접수(체육예술건강과) -첨부물도 스캔하여 공문에 가급적 포함 (우편 송부, 본인 지참 접수도 가능함)	◆추천체육특기자를 받을 학교에서 •추천체육특기자 심사원서 •배정 희망 학교장 동의서 •재적교 학교장 추천서를 작성하여 공문으로 접수(체육예술건강과) -1차 : 매년 3월 4주 금요일까지 신청 -2차 : 매년 6월 4주 금요일까지 신청 -3차 : 매년 9월 4주 금요일까지 신청

10) 체육특기자 자격 상실로 인한 전입학

가) 대상: 체육특기자로 고등학교에 입학한 자(체육고 포함)가 팀 해체, 운동이 불가능할 정도의 신체질환 등으로 체육특기자 자격을 상실하여 거주지 학군 소재 고등학교로 전입학을 희망하는 자(단, 거주지 소재 고등학교에 체육특기자로 진학한 경우 원적교 재학)

나)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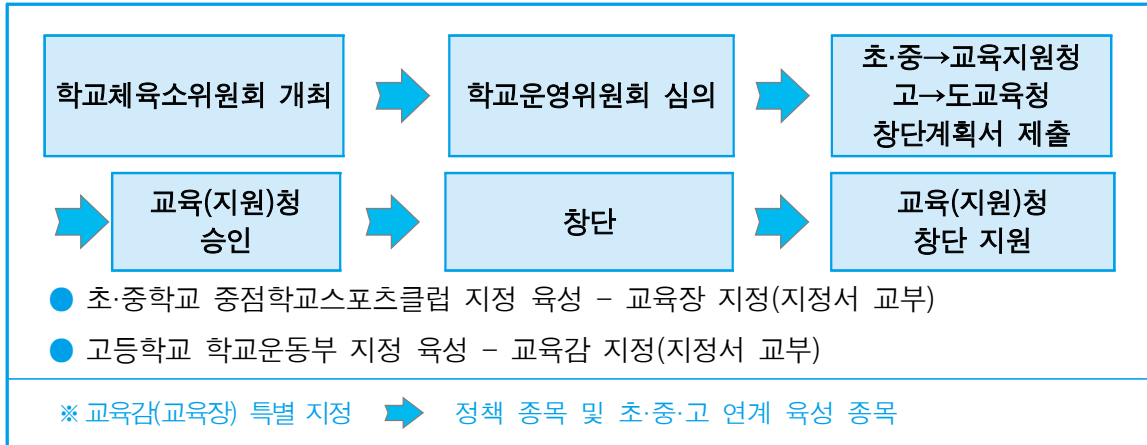
- 적용지역 고등학교: 학교별 체육소위원회 심의 ⇒ 거주지 학군 소재 일반고등학교로 전입학을 추천 ⇒ 도교육청 중등교육과 및 체육예술건강과 공문 발송 ⇒ 적용지역 일반고등학교 전입학 배정 원칙에 의거 배정
- 비적용지역 고등학교: 학교장 간의 협의

※ 학교 잔류 시 내부결재 처리(학교체육소위원회 회의록 필수)

체육특기자 포기로 인한 제출서류	
• 고등학교 전입학 배정원서 • 주민등록등본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학교장 의견서 • 담임 의견서 • 학부모 사유서 • 학교체육소위원회 회의록 사본(원본대조필)	• 사유에 따라 - 팀해체의 경우: 해체 사유서 - 신체질환의 경우: 종합병원급 진단서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 기능부족으로 판단되는 경우: 감독교사 의견서(입학·전입학일로부터 3개월 이후 신청 가능)

5. 중점학교스포츠클럽(학교운동부) 창단 절차 및 지원

가. 중점학교스포츠클럽(학교운동부) 창단 절차



나. 교육(지원)청 지원: 창단지원금 및 장비구입비 지원

※ 창단지원비 신청 시 창단계획서와 중점학교스포츠클럽(학교운동부) 지정서 사본을 반드시 첨부

다. 중점학교스포츠클럽(학교운동부) 창단 승인 요청 서류 안내

일반	- 중점학교스포츠클럽(학교운동부) 지정 신청서 1부 - 중점학교스포츠클럽(학교운동부) 선정 이유서 1부 - 학교운영위원회·직원 회의록 사본 1부 - 가맹경기단체장 추천서 1부 - 선수현황 1부 - 학교 자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운동부 운영 경비(3개년) 확충 계획 - 지자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운동부 운영 경비(3개년) 약정서
경남체고 (종목 변경·신설)	- 학교운영위원회·직원 회의록 사본 각 1부 - 육성 종목 선정 사유서 - 학교장 의견서

※ 중점학교스포츠클럽(학교운동부) 지정 신청 관련서류의 허위사실 발견 시 향후 3년간 지정 불허
※ 중점학교스포츠클럽(학교운동부) 지정 신청 시 기본 육성선수 확보 계획 수립 제출
(선수 확보 계획 미 수립 시 중점학교스포츠클럽(학교운동부) 지정 불허)

중점학교스포츠클럽(학교운동부) 운영경비(3개년) 확충 계획 내용
연간 운영비[인건비, 훈련비(전지훈련, 일일훈련, 합동훈련 등), 장비비(소모품)] 필요 예산 중, 당해 연도 학교 자체 예산 최소 20%를 포함한 연간 운영비의 50% 이상을 확보(지자체 및 기업체 MOU)하여야 함

라. 중점학교스포츠클럽(학교운동부) 지정 및 변경 신청

※ 신입생 전형요강 작성 전까지 신청한 학교에 한하여 체육예술건강과에서 심의 검토 후 지정
(관련근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8조②호)

마. 지역사회 체육 인프라(시설, 인력 등) 활용 권장

※ 학교 내 시설이 없어 운영이 어려운 종목(조정, 스키, 골프 등)의 경우, 지역 및 대학의 체육 시설, 인력 등을 활용·연계 계획 수립 및 실질적 훈련 가능 시 지원

6. 전지훈련 관리 철저

- 가. 전지훈련은 가급적 자제 및 지양하되, 실시할 경우 방학기간 중 실시가 원칙이며 실시 결과 공개를 철저히 이행
- 나. 학교장은 학부모 동의, 학생선수 안전, 학습권 보장, 학부모 부담경비 최소화, 학교폭력 예방 등을 고려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 다. 학교관계자가 숙소 및 훈련장 등에 사전답사 의무적으로 실시
- ※ 학생 안전이 확보되고, 관련 규정에 따라 허가된 시설물 이용
 - ※ 현장체험학습 운영 매뉴얼 준용
 - ※ 감염병 상황에서는 교육(지원)청 사전 승인 후 실시
- 라. 해외의 경우 국가대표 훈련, 국제 교류전 등 정부(공공)기관이 주관하는 훈련에 학부모 부담이 없는 경우 허용, 그 외 해외 전지훈련은 가급적 지양
- 마. 중점학교스포츠클럽(학교운동부) 전지훈련 세부 절차

1) 국내 전지훈련

단계	내 용	담당 기관(단체)	비 고
1	전지훈련 계획서 제출	학교	- 학생/학부모 동의서 포함
2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학교	- 실시 여부 결정
3	세부 계획 수립	학교	
4	사전답사	학교	- 학교 관계자 숙소 및 훈련장 등 사전답사 의무적 실시
5	전지훈련	학교	- 안전사고 예방 유의
6	결과 보고(내부결재) 및 공개(누리집)	학교	- 내부결재 - 결과보고서 및 경비 정산서

2) 해외 전지훈련

단계	내 용	담당 기관(단체)	비 고
1	전지훈련 계획서 제출	주관기관(단체)→학교	- 학생/학부모 동의서 포함
2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학교	- 실시 여부 결정
3	세부 계획 수립 사전 보고 및 참가 현황공개	학교 → <u>교육(지원)청</u>	- 1개월 전까지 - 학교 누리집
4	사전답사	학교	- 학교 관계자 숙소 및 훈련장 등 사전답사 의무적 실시
5	전지훈련	주관 기관(단체), 학교	- 안전사고 예방 유의
6	사후 보고 및 결과공개	주관기관(단체) → 학교 → <u>교육(지원)청</u>	- 귀국 후 15일 이내 - 학교 누리집

※ 사전 보고: 전지훈련 1개월 전 소속 교육(지원)청에 전지훈련 계획서 제출(인원, 일정 및 경비 등 포함) ⇒ 학교 누리집 탑재

※ 사후 보고: 전지훈련 종료 후 15일 이내에 관할 교육(지원)청에 결과보고서 및 경비 정산서 제출 ⇒ 학교 누리집에 탑재

7. 중점학교스포츠클럽(학교운동부) 차량 운영

가. 중점학교스포츠클럽(학교운동부) 차량 운영 시 차량 운영 방법, 비용 부담, 안전대책 등에 관한 사항을 중점학교스포츠클럽(학교운동부) 연간 운영계획에 명시(학교운영위원회 심의)

- 1) 비정기적인 대회출전 시 차량 운영, 이동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는 대회출전 계획에 관련 내용 포함
- 2) 학생 선수 수송차량 운영 시 현장체험학습에 준해 차량 계약, 안전계획 수립 후 운영
- 3) 운전원에게 안전운행, 차량 점검·정비, 교통법규 준수에 관한 교육 실시

나. 정수배정 받은 학교 차량이 없는 경우 대중교통을 이용한 학생선수 이동 원칙

※ 학부모, 동창회로부터 기증받아 운행하는 차량은 교육청으로부터 정수 배정을 받아 운행하고, 학교 물품으로 관리

다. 불가피한 경우 렌트, 리스를 통한 차량 이용 권장

- 1) 개인이 지입하여 운행하는 차량은 이용 불가, 정식업체 이용할 것
- 2) 개인 명의의 차량에 대한 유류비, 할부금 등의 불법 찬조금지

라. 차량을 정기적으로 점검·정비하고 안전운행 철저

※ 학생 차량 운행일지 및 차량 정비대장 작성(부록 참고)

마. 기타 차량 관리 및 안전교육에 대한 사항은 경상남도교육청 통학차량 관리 및 운영 지침 준용

● 관련 근거

-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규정(대통령령 제32956호, 2022.10.25.)
- 국민체육진흥법
- 학교체육 진흥법,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령,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규칙
- 제3차 학교체육진흥 기본 계획(2024.1.5.)
- 2026년 학교체육 활성화 시행계획(교육부 민주시민교육과, 2026.2.)

● 추진 계획 및 개요

추진 사업	목표	추진시기	대상(주관)
지역 연계 학교체육 협의회 운영	18청	3~12월	교육지원청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운영	2회 이상 (서면 포함)	연중	도교육청, 교육지원청
학교체육 진흥 조치 점검 및 컨설팅	1회	10월	도교육청, 교육지원청, 전 학교
학교체육 진흥 추진 기획팀 운영	연중	연중	도교육청
학교체육 활성화 방안 추진 우수학교 선정	1회	10월	도교육청
우수선수 지도실적 평정대회 운영	1회	10월	도교육청
학교체육 연구대회 운영(경남·전국)	1회	9~11월	도교육청, 교육부

● 기관별 역할

교육지원청	단위 학교
· 학교체육협의회 계획 기본계획 수립 · 학교체육지역협의회 운영 · 학교체육 진흥 조치 점검 및 컨설팅 · 학교체육 연구대회 지원	· 학교체육지원체계 협력 · 학교체육 진흥 조치 점검 · 학교체육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 · 학교체육 연구대회 참여 · 학교체육 인프라 확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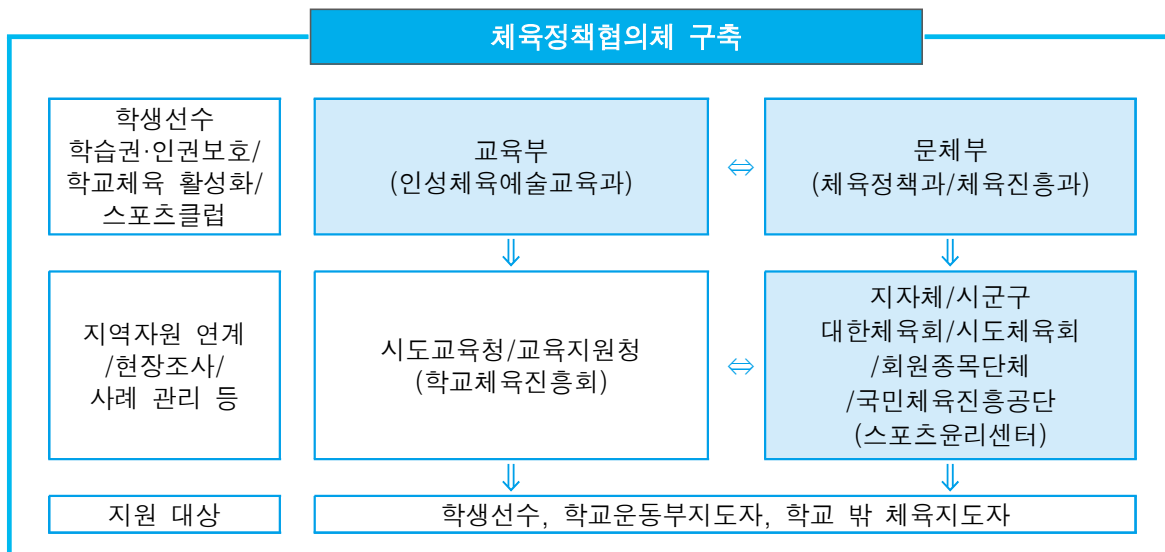
4-1

학교체육 거버넌스 및 지원체계 구축·운영

● 목적 및 기본 방침

- 지역의 시설·인력 등을 활용하여 양질의 신체활동 및 체육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지역협의체 구축 및 지역 연계 체육교육 활성화 사업 추진
- 학교체육지역협의체, 학교체육진흥회, 학교체육중앙지원단 운영 등 지속 가능한 학교체육 네트워크 구축·운영

● 체육정책협의체 구축



4-1-1

학교체육 통합 거버넌스 구축

1. 학교체육진흥회 운영 지원

가. 목적: 학교스포츠클럽 대회 등 초·중·고 학생 관련 각종 스포츠활동을 교육적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운영·관리

나. 운영: 학교체육 정책의 집약적 추진을 지원하는 전담기구로 17개 시·도교육청을 회원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으로 설립(2018.10.26.)

1) 초·중·고 학교스포츠클럽(일반학생) 및 학교운동부(학생선수) 운영, 학생선수 학사관리와 진로진학 지원, 일반학생 체육활동 확대 등을 교육적 차원에서 체계적 운영·관리

2)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및 대회 개최 관련 규정과 종목별 운영 규정 제정·시행

※ 미국의 NFHS(National Federation of State High School Association), 일본의 고등학교체육연맹·중학교체육연맹: 학생 체육활동을 전담하여 관리·감독하는 기관

※ 국내 대학스포츠를 지원·관리하는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 운영 중(2010~, 문체부)

학교체육진흥 관련 위원회 및 협의체

위원회명	근거	운영 주체
학교체육진흥중앙위원회	학교체육진흥법	교육부, 문체부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학교체육진흥법, 시도조례	도교육청 교육지원청
학교운동부지도자관리위원회	학교체육진흥법 제12조	도교육청
학교체육소위원회	초중등교육법	학교

2.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운영

가. 목적: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수립 및 효율적 추진

※ 「학교체육 진흥법」 제16조(학교체육진흥위원회 등)

※ 「경상남도교육청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나. 기능: 학교체육 진흥에 관한 중요한 사항 심의

- 1) 학교체육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
- 2) 학생의 체력 증진을 위한 각종 규정·제도 개선
- 3) 학교체육시설 확충 및 선진화
- 4) 학교스포츠클럽 추진
- 5) 학교운동부 육성, 전국체육대회 및 전국소년체육대회 운영
- 6) 학교체육활성화 관계 기관·단체와의 연계·협조
- 7) 그 밖에 교육감이 학교체육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다. 조직: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 소속의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구성·운영

라. 운영

- 1) 회의 개최 정례화 및 다양화
- 2)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연 2회 이상 대면 회의 개최를 정례화 하고 서면 회의 등을 적극 활용
- 3)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의 여건에 따라 지역위원회에 분과 위원회를 구성하여 상시 운영 권장

3. 학교체육지역협의체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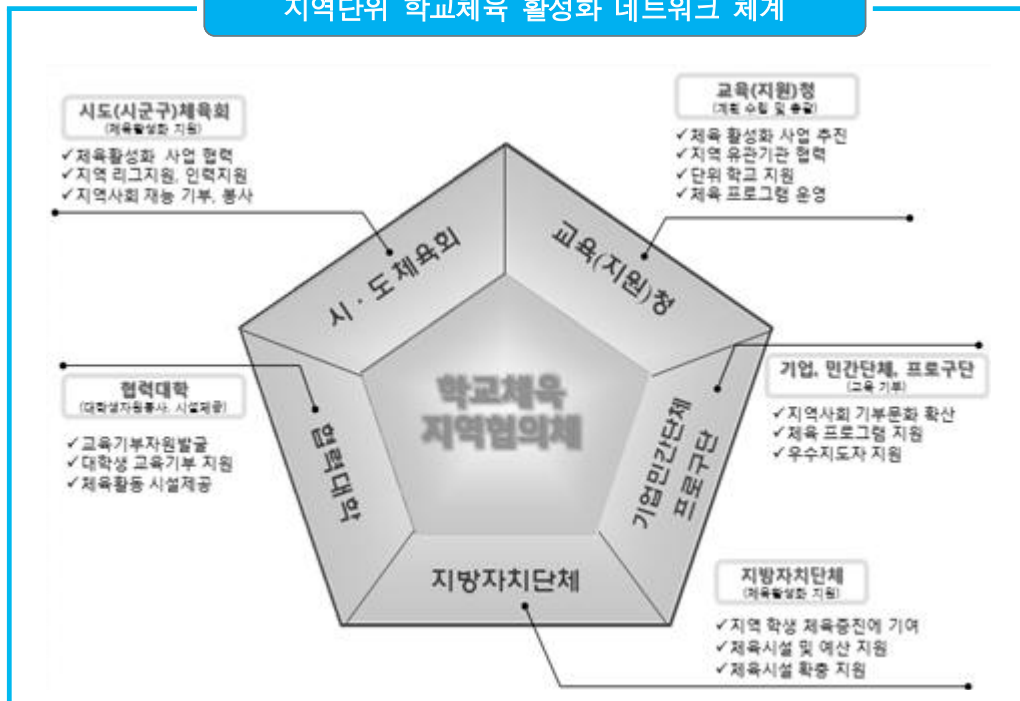
가. 목적

교육지원청, 지자체, 유관기관, 지역대학, 체육단체, 교원학습공동체, 학교가 참여하는 체육교육협의체를 구축하여 지역 연계 체육교육 활성화 사업 추진

나. 사업

- 1) 지역연계기관 프로그램 및 지역 교육기부 자원을 발굴하여 학교와 매칭
- 2) 초·중·고등학생 교육활동 시 공공 스포츠 시설 무료 이용 추진
- 3) 학생의 스포츠 활동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학교주변 지역 사회의 스포츠 관련 시설, 프로그램 등에 대한 정보(스포츠활동 맵 제작 배포 등)를 학교·학생들에게 제공

지역단위 학교체육 활성화 네트워크 체계



4. 학교체육소위원회 운영

가. 목적: 학생들의 체육활동 활성화 및 공부하는 학생선수 육성 등 학교 체육교육 강화

나. 운영

- 1) 교내 학교스포츠클럽 육성, 지역사회 스포츠 자원 활용, 학교 운동부 및 체육시설 관리 등 체육활동 활성화 지원
- 2) 도교육청은 학교체육소위원회 설치·운영 지침을 학교에 안내하고 점검
- 3) 단위학교에서는 학교체육소위원회 운영 규정 마련
- 4) 도교육청에서 운영한 학생선수보호위원회는 '학교운동부지도자관리위원회'에 통합 운영

다. 구성: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체육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

※ 학교의 학교체육소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름

1. 학교체육 진흥 조치 점검

가. 추진 배경

- 1) 학생의 체력증진과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해 학교체육 진흥의 적절한 조치 여부를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점검하도록 법령 개정
- 2)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을 돕기 위해 학교체육을 활성화하고, 시도교육청에서의 행·재정적 지원 방안 모색

나. 관련 법령 : 학교체육 진흥법(시행령)

【「학교체육 진흥법」 제6조】

제6조(학교체육 진흥의 조치 등)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의 체력증진과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체육교육과정 운영 충실 및 체육수업의 질 제고
 2. 제8조에 따른 학생건강체력평가 및 제9조에 따라 비만 판정을 받은 학생에 대한 대책
 3. 제10조에 따른 학교스포츠클럽 및 제11조에 따른 학교운동부 운영
 4.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5. 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
 6. 유아 및 장애학생의 체육활동 활성화
 7. 학교체육행사의 정기적 개최
 8. 학교 간 경기대회 등 체육 교류활동 활성화
 9. 교원의 체육 관련 직무연수 강화 및 장려
 10. 그 밖에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조치가 적절하게 취하여지고 있는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기적으로 감독하여야 한다.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령」 제2조의2】

제2조의2(학교체육 진흥 조치에 대한 감독) 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학교체육 진흥 조치에 대한 감독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감독은 서면 점검으로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다. 점검 방향

- 1) (단위학교)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학교체육 진흥을 위해 자율적으로 노력하고, 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자체점검 후 후속 조치 실시 (<부록> 붙임 2 참조)
- 2) (교육청) 단위학교가 학교체육 진흥을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컨설팅 및 예산 교부 등 행·재정적 지원 방안 모색

시도단위 컨설팅

- ▶ 학교체육교육 컨설팅단 운영
- ▶ 학교체육 진흥 지원 추진기획팀 운영
- ▶ 단위학교/학교운동부 컨설팅
- ▶ 시도 우수사례 발굴·공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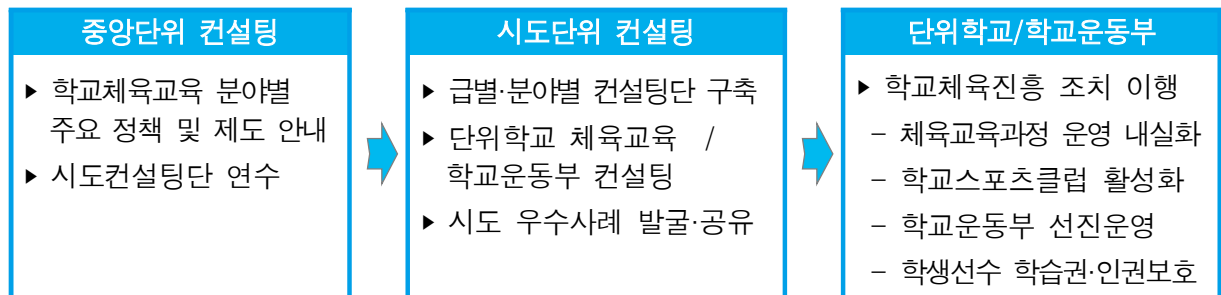


단위학교/학교운동부

- ▶ 학교체육진흥 조치 이행
 - 체육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
 - 학교운동부 선진운영
 - 학생선수 인권보호

2. 학교체육교육 컨설팅단 운영

가. (운영 방향) 학교체육 정책의 현장 안착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규모를 확대하고 학교급별·분야별 시도단위 컨설팅단 세분화 구성·운영



나. (컨설팅단 역할) 학교체육교육(학교스포츠클럽, 생존수영, 체육온활동), 학교운동부 운영 등 현장 컨설팅 등 우수사례 발굴·보급 및 현장 지원

- 1) (중앙컨설팅단) 학교체육교육 정책 및 제도 안착을 위한 홍보, 컨설팅 매뉴얼 보완, 시도컨설팅단 연수 및 학교체육교육 분야별 우수사례 발굴·공유·홍보

※ 건강체력교실, 체육온활동, 학교스포츠클럽, 교원·체육지도자 연수, 학생선수 인권보호 등

- 2) (시도컨설팅단) 학교체육 진흥조치 분야별 내용, 학교스포츠클럽 운영·학교운동부 컨설팅 등 현장 지원 및 우수 사례 발굴, 시·도 간 공유 지원

학교체육교육 중점 컨설팅 사항	
① 체육교육과정 운영 및 체육수업 질 제고	④ 학생선수 출결관리 강화 및 학습권 보장, 인권보호, 진로상담
② 학생건강체력평가 및 건강체력교실	⑤ 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
③ 체육온활동 및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⑥ 기타 학교체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다. 운영 방안

- 1) 중앙컨설팅단, 시도컨설팅단, 학교체육 진흥 추진기획팀 등으로 구성·운영
- 2) 학교체육교육 컨설팅 희망학교 대상 상시 컨설팅(연중)
- 3) 학교체육 진흥 조치 점검 미흡 학교 대상 컨설팅(26년 11월~)

3. 학교체육교육 정보 종합 플랫폼 고도화

가. (운영 방향) 학교체육 수업,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교원연수, 학교운동부 운영, 학생선수 학습 지원 등을 위한 ‘학교체육교육 종합포털’ 구축

나. (운영 방안) 학교체육교육 및 학생선수 자료 집적, 축전 홈페이지, 통계 조사 시스템 일원화를 통하여 학교체육 활동 지원 및 효과성 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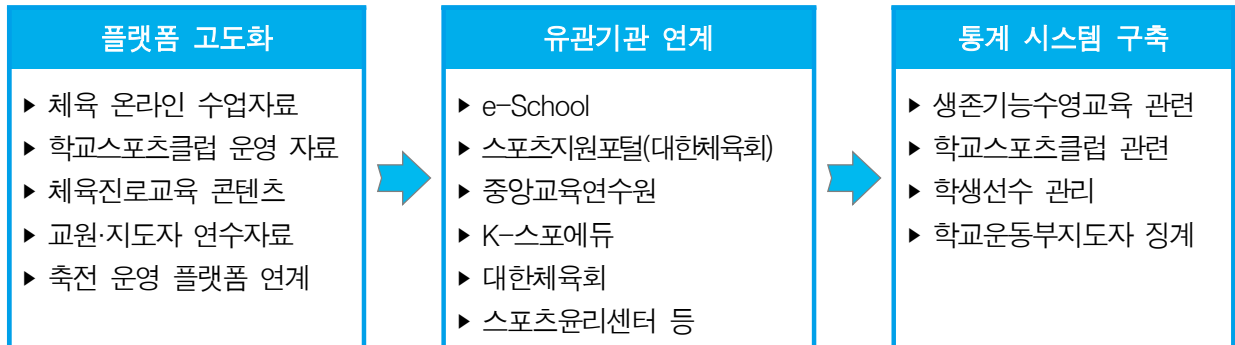
- 1)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에서 기 개발된 초·중등 체육교육 자료 체계화 및 공동 활동을 통하여 학교체육 수업 및 활동 지원

※ 메타스포츠 체육 앱, 온·오프라인 학습자료, 체육진로교육 콘텐츠,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우수사례 등

- 2) 교원·체육지도자 연수 자료 및 콘텐츠 탑재, 관련 원격연수기관 연계를 통한 연수의 접근성 제고 및 참여 확대 도모

※ 중앙교육연수원(www.neti.go.kr), 국민체육진흥공단 K스포에듀(edu.kspo.or.kr) 등

- 3) 학생선수 관리, 생존수영 및 학교스포츠클럽 현황 조사 일원화를 통한 시도·학교 업무 효율성 지원
- 4) 학생선수 학습 및 스포츠활동 지원을 위한 대한체육회, 종목별 경기단체, 스포츠윤리 센터, 공공스포츠클럽, 학생선수 e-School 누리집 등 유관기관 연계



● 목적 및 기본 방침

- 학교체육 교육의 당면과제 해결 및 교육의 질적 수준을 향상
- 새로운 교육이론과 교육방법, 교육자료 등을 연구 개발
- 체육(담당)교사의 전문성 신장 및 연구의욕 고취
- 체육수업혁신 및 학교체육연구대회 활성화
- 창의적인 체육수업 모델 개발
- 체육수업 우수사례 발굴·보급

4-2-1

우수선수 지도실적 평정대회 및 유공자 포상

1. 목적

전국소년체육대회 및 전국체육대회(동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낸 지도 교원을 시상함으로써 지도 교원의 사기를 높이고 노력에 대한 보상 및 학교 체육 발전 도모

2. 기본방침

가. 대회의 범위: 전국소년체육대회 및 전국체육대회(전국동계체육대회 포함)

나. 대상자

- 1)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1위~8위까지 입상한 선수(팀)를 직접 지도한 초등교원
- 2)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1위~3위까지 입상한 선수(팀)를 직접 지도한 중등교원
- 3) 전국동계체육대회에서 1위~3위까지 입상한 선수(팀)를 직접 지도한 초·중등교원

※ 다수의 입상 실적이 있을 경우, 최상위 입상 실적만 인정

다. 우수선수 지도실적 평정대회 자격 제한

- 1) 해당 실적서류 미제출자
- 2) 선수 등록 및 지도교원 명단 제출 시에 지도교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자
- 3) 시범경기 종목 입상자(팀)의 지도교원
- 4) 대회 지도교원 명단과 우수사례 지도사례의 지도교원 명단이 다른 경우
(단, 질병, 휴식, 인사이동 등 부득이한 경우는 도교육청 담당자와 별도 협의)
- 5) 실제 학생선수 지도를 하지 않은 자(업무분장표에 명시된 교원에 한함)
- 6) 지도교원 명단(계획서) 제출 기간 이후 해당 학생 전입으로 인한 지도교원인 자

※ 관련: 2026. 경상남도교육청 연구대회인정위원회 심의 결과 및 행정사항 알림(초등교육과-3444, 2026.2.19.)

3. 추진 일정

구분	제출 서류	제출 기한	대회명	제출 대상	제출처
평정대회 지도교원 명단 및 지도계획서 제출	• 평정대회 지도교원 명단 및 지도계획서	2.13.(금)	전국 동계체육 대회	• 대회 참가 초·중·고등학교 학생선수(팀) 지도교원	학교 → 도교육청 체육예술건강과
		4.24.(금)	전국 소년체육 대회	• 대회 참가 초·중학교 학생선수(팀) 지도교원	학교 → 해당 교육지원청
		5.1.(금)			해당 교육지원청 → 도교육청
		4.24.(금)	전국 체육대회	• 대회 참가 고등학교 학생선수(팀) 지도교원	학교 → 도교육청 체육예술건강과
보고서 제출	• 우수선수 지도사례 • 지도실적 확인서 • 상장사본 (실적증명)	3.13.(금)	전국 동계체육 대회	• 초·중·고 입상 지도교원 (전국동계체전 : 1 - 3위)	학교 → 도교육청 체육예술건강과
		6.19.(금)	전국 소년체육 대회	• 초등학교 입상 지도교원 (전국소체 : 1 - 8위)	학교 → 해당 교육지원청
		6.26.(금)		• 중학교 입상 지도교원 (전국소체 : 1 - 3위)	해당 교육지원청 → 도교육청
		11.6.(금)	전국 체육대회	• 고등학교 입상 지도교원 (전국체전 : 1 - 3위)	학교 → 도교육청 체육예술건강과
심사 및 시상	12월 초				

4. 시상 계획

가. 심사 기준

등급	초등교원		중등교원
	전국소년체육대회	전국동계체육대회	전국(소년 및 동계포함) 체육대회
1등급	· 개인, 개인단체 1위 입상자(팀) · 순수단체 1위, 2위 입상팀	· 개인, 개인단체, 순수단체 1위	· 개인, 개인단체, 순수단체 1위
2등급	· 개인, 개인단체 2위, 3위 입상자(팀) · 순수단체 3위 입상팀	· 개인, 개인단체, 순수단체 2위	· 개인, 개인단체, 순수단체 2위
3등급	· 개인, 개인단체 및 순수단체 1회전 통과 · 기록경기 결승 진출 (8위 이내)	· 개인, 개인단체, 순수단체 3위	· 개인, 개인단체, 순수단체 3위

나. 시상

- 1) 심사 결과 입상자에게는 교육감 상장 수여
- 2) 입상자에게는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35조 제1항 제2호 및 제37조 제2항에 따라 시·도 규모 연구실적 1등급, 2등급, 3등급 실적 인정
- 3) 기타사항
 - ① 참가선수 명단은 대회 전 출전 선수의 지도교원이 제출
 - ② 우수선수지도사례 제출자는 입상 선수에 해당하는 교원에 한함
 - ③ 학교장은 우수선수지도사례 제출자의 지도실적 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하고 지도실적 내용에 대하여 책임짐

5. 전국(소년)체육대회 유공자 포상

가. 목적: 우수한 성적에 대한 자긍심 고취 및 관계자의 사기 진작

나. 시상 내역

- 1) 교육감 표창: 입상학교 학교장(재표창 금지 적용)
- 2) 감사패: 가맹경기단체, 체육회
- 3) 포상금: 학교운동부지도자
- 4) 장학금: 학생선수

4-2-2

학교체육 연구대회 운영

1. 목적

가. 학교체육 주요 정책의 현장 적용을 통한 학교체육 현장 적합성 제고

나. 학생들이 좋아하는 체육수업(학교스포츠클럽)과 관련된 수업 아이디어를 지속적으로 적용한 우수사례 발굴 및 수업 방법 확산

2. 개요

가. 명칭: 학교체육연구대회(경남, 전국)

나. 목적: 체육수업혁신 및 학교체육연구대회 활성화

다. 대상: 초·중·고 교원 및 교육전문직

라. 분야: 체육연구논문대회, 체육수업사례발표대회

3. 추진 일정

가. 계획서 제출 방법: 공문 제출

– 초·중학교 → 교육지원청<2026.4.3.(금)> → 도교육청 체육예술건강과<2026.4.10.(금)>

– 고등학교, 특수학교, 교육전문직 → 도교육청 체육예술건강과<2026.4.10.(금)>

나. 보고서 제출: 2026. 9. 11.(금) 18:00까지, 공문 및 인편 제출

다. 도대회 심사: 2026. 9월 말 예정

라. 도대회 결과 발표: 2026. 9월 예정 / 도교육청 누리집(별도 공문 없음)

마. 전국대회 제출: 2026. 10월 예정

바. 전국대회 심사일: 2026. 10월 중(대한체육회)

사. 전국대회 결과 발표(입상작 탑재): 2026. 12월 중

※ 세부 일정은 교육부 안내에 따라 별도 공문 발송

4. 연구 주제

분과 내용	연구논문	수업사례발표
제출 형식	● 논문 형식	● 수업사례 수업지도안, 동영상 등
연구 주제 (예시)	○ 학교체육 주요정책 분야 연구 ▪ 365+ 체육온활동(동아리)을 통한 신체 활동 증진 방안 ▪ ‘메타스포츠School:온라인체육교실’ 앱 적용 신체활동 증진 프로그램 방안 ▪ 인공지능(AI) 활용 체육교육 가능성 탐색 등 ▪ 학생 맞춤형 체력향상 프로그램 개발 ▪ 생존기능 중심 초등생존수영교육 운영 방안 ▪ 초등학교 저학년 신체활동 증진 방안 ▪ 지정형스포츠클럽 연계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 학교스포츠클럽 다양화 및 지역 연계 (학교-지역연계 협력 모델 개발 등) 방안 ▪ 대면·비대면 전국학교스포츠클럽 대회 활성화 방안 ▪ 교육과정 내 학교스포츠클럽 질 향상 방안 ▪ 교원 및 체육지도자 전문역량 강화 방안 ▪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른 학생 중심 체육 교과 교육 내실화 방안 ▪ 고등학교 체육교과 질 향상 방안 ▪ 그 외 학교체육 정책 관련 주제	○ 체육수업(학교체육활동) 개선 사례 ▪ 틈새시간 활용 학생 체육활동 일상화 운영 사례 ▪ 365+ 체육온동아리 연계 체육수업 운영 사례 ▪ ‘메타스포츠School:온라인체육교실’ 앱 적용 체육수업 사례 ▪ 체육과 블렌디드 체육수업 운영 사례 ▪ 핵심(교과)역량 함양을 위한 체육수업 사례 ▪ 학생 맞춤형 체력 증진 체육수업 운영 사례 ▪ 학교/지역 간 학교스포츠클럽 리그 운영 ▪ 학교스포츠클럽 활동과 체육수업 연계 사례 ▪ 지역 자원 활용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사례 ▪ 고교학점제 체육교과 운영을 위한 중점 교육 과정 운영 사례 ▪ 체육 진로 공동교육과정 운영 사례 ▪ 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 프로그램 사례 ▪ 여학생 친화형 체육수업 설계 운영 ▪ 초등학교 신체활동 증진을 통한 체육수업 활성화 사례 ▪ 생존기능 중심 초등생존수영교육 사례 ▪ 그 외 학교체육활동 개선 체육수업 사례 등

5. 심사 및 시상

가. 심사 방법: 심사위원회 구성, 보고서 심사 및 수업 현장 실사

나. 입상: 보고서 제출 편수 40% 이내, 1:2:3의 비율로 1, 2, 3등급 부여

다. 전국대회 출품: 도대회 1등급 입상자 추천(1등급 없을 시 2, 3등급)

라. 도대회 시상: 도대회 입상자 교육감상 수여 및 연구 평정점 부여

마. 전국대회 시상: 1등급 교육부장관상 수여 및 전국 규모 연구대회 실적 인정, 2·3등급 대한체육회장상 수여 및 전국 규모 연구대회 실적 인정

※ 2개 이상의 연구대회에 출품하여 입상한 경우 하나의 입상 실적만을 인정

〈관련 규정: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37조 2항, 연구대회관리규정 제5조 2항(훈령 제669호)〉

관련 공문

K에듀파인 ⇒ 업무지원 ⇒ 알림판(일반게시판) ⇒ 기본계획 알림방 ⇒ 게시번호 (25-161450) 『2026. 학교체육 연구대회 계획』

1. 목적

가. 학교체육 활성화 주요정책 추진 성과가 탁월한 학교 및 유공 교원 발굴

나. 학교체육 활성화 분야 주요정책의 발전과 관계자의 사기 진작

2. 개요

가. 분야: 학교체육 활성화(학교, 개인)

나. 대상: 전 초·중·고 및 업무 담당자

다. 일정: 2026. 10월 중 선정

※ 교육부 장관 표창 추천(최우수학교 및 유공자는 교육부 장관 표창 추천 예정)은 교육부 학교체육 활성화 표창 계획에 따름

라. 규모: 초·중·고 총 13교 선정 예정

– 우수학교(13개 학교) 및 유공자(13명) 교육감 표창 수여(12월)

※ 선정 규모는 교육부 장관 표창 추천 규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마. 심사 기준

구분		요소		배점
내용				
체육교육과정 운영 충실 및 체육수업의 질 제고	체육교육과정 운영 충실	- 단위수 확보 및 학년별 편성의 적정성 - 다양한 신체활동과 전인적 성장을 위한 교육과정 편성·운영		5
		제출서류	2024, 2025, 2026 교육과정 편성표 각 1부 - 체육과 연간 수업계획표 1부 - 체육과 연간 평가계획표 1부	
	체육수업의 질 제고	- 교과협의회(장학활동) 운영 실태 - 창의적 수업 방법 개발 및 적용 실태		10
		제출서류	- 체육과 교과(장학)협의회 개최 실적 1부 - 창의적 수업 방법 개발 및 적용 실적 및 자료 1부 (없으면 미 제출)	
학생건강체력평가(PAPS) 및 비만학생 대책	계획 수립	- 학생건강체력평가제(PAPS) 계획 수립 여부 - 건강체력교실 운영 계획 수립 여부		5
		제출서류	- 학생건강체력평가제(PAPS) 운영 계획서 1부 - 건강체력교실 운영 계획서 1부	
	건강증진 프로그램운영 실적	건강체력교실 운영 실적		10
		제출서류	건강체력교실 운영 실적 1부	
학교스포츠클럽 및 중점학교스포츠클럽	계획 수립	-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계획 수립 여부 - 중점학교스포츠클럽(학교운동부) 운영 계획 수립 여부		5
		제출서류	-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계획 1부 - 중점학교스포츠클럽(학교운동부) 운영 계획 1부 (훈련 계획, 학습권 및 인권 보호, 청렴 등 포함)	

(학교운동부) 운영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현황	◦ 운영 학교스포츠클럽 수 ◦ 학교스포츠클럽 등록률(1인 1클럽 이상 / 100% 이상 목표)	10	
		제출서류 ◦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현황 1부		
	중점 학교스포츠클럽 (학교운동부) 운영 현황	◦ 학생선수 현황 ◦ 대회 참가 현황 및 입상 실적	5	
		제출서류 ◦ 중점학교스포츠클럽(학교운동부) 운영 현황 1부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 보호	학습권 보장	◦ 학생선수 정규수업 이수 의무화 ◦ 수업 결손 보충(e-School 등) 및 최저학력제	5	
		제출서류 ◦ 수업결손 보충학습 및 기초학력 보장 프로그램 운영 현황 1부		
	인권 보호	◦ 학생선수 인권 보호 예방 교육 실시 여부	5	
		제출서류 ◦ 학생선수 인권 및 각종 예방교육 실시 현황		
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		◦ 여학생 특성을 반영한 양성평등적인 체육활동 환경 조성	5	
	제출서류	◦ 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 계획 1부 ◦ 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 운영 실적 1부		
학교체육 행사의 정기적 개최		◦ 교내 리그전 운영 실적 ◦ 교내체육대회 등 체육 행사 개최 실적	10	
	제출서류	◦ 교내체육대회 등 체육 행사 개최 계획 각 1부 ◦ 교내 (수준별)학교스포츠클럽 리그 운영 현황		
학교 간 경기대회 등 체육 교류활동 활성화		◦ 각종 스포츠클럽대회 참가 실적 ◦ 학교 간 경기대회 등 체육 교류활동 참가 실적	10	
	제출서류	◦ 학교 간 경기대회 등 체육 교류활동 참가 계획 각 1부 ◦ 각종 학교스포츠클럽 대회 참가 실적		
교원의 체육 관련 직무연수 강화 및 장려		◦ 교원 체육수업 및 온라인 수업 관련 연수 이수 실적	5	
	제출서류	◦ 체육수업 및 온라인 수업 관련 연수 이수 실적		
그 밖에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연간계획 수립	◦ 체육과 연간계획서 작성·운영 여부	10	
		제출서류 ◦ 체육과 연간계획서 1부 또는 학교교육과정계획서 (체육 관련 부분 발체) 1부		
	체육시설 및 교구확보실태	◦ 체육시설 및 교구확보 현황		
		제출서류 ◦ 체육교구 현황표 1부		
	단위학교 특색프로그램	◦ 전교생 체육활동프로그램 운영 여부 ◦ 7560+운동 실천 ◦ 그 외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한 학교별 특색사업		
제출서류	◦ 단위학교 특색프로그램 관련 자료 [자유 양식]			
합 계				100

1. 학교체육 대상 및 대한민국 학교체육 축전 운영을 통한 우수사례 발굴

가. (운영 방향) 학교체육정책 세부 과제별 우수사례 및 성과를 실천한 단위 학교·단체(기관) 등의 사례를 적극 발굴·확산

나. (운영 내용) 학교체육교육, 학교스포츠클럽 및 학교운동부 운영 등 정책별 우수사례와 안착 사례의 발굴·시상 및 현장 확산 지원

※ [학교체육 대상] 계획 안내('26.3월)→정책 분야별 세부 과제 실천('26.4~10월)→심사·시상('26.10~12월)

- (학교체육 대상)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 세부 정책별 개인 및 단체의 발굴과 시상·사기 진작을 위한 공모 및 심사 운영
- (대한민국 학교체육 축전) 학교체육 대상을 통해 발굴된 우수사례 및 학교체육정책 관련 현장 실천 사례의 공유·확산의 장 마련

2. 학교체육 정책 및 제도 대국민 홍보 확대

가. 학교체육교육 정책 및 제도의 안정적 착근 및 현장의 이해도 제고를 통한 현장 적용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각적인 홍보 실시

나. 학교스포츠클럽의 체계적 운영, 학생선수 최저학력제도 이해, 학교운동부 선진적 운영 방안 등 학교, 학생, 교사, 학부모 대상 인식 제고 노력

체육교육담당 업무 분장표

체 육 교 육 담 당			
직위(직명)	성 명	담당업무	담당종목
장학관	이수용 (代전상희)	○ 체육교육담당 업무 총괄	전 종목
장학사	전상희 (代조신희)	○ 체육교육 기획(장학, 인사, 교육과정 등) ○ 학교체육 기본 계획 및 진흥 계획 수립 ○ 전국체육대회 참가 지원 ○ 경상남도체육회 전문체육 관련 업무(도민체육대회 포함) ○ 중등교사임용시험(실기) 운영 ○ 경남체육고등학교 지원 ○ 중점학교스포츠클럽(학교운동부) 운영(청렴 포함) ○ 학생선수 관리(현황, e-school, 출결, 최저학력제, 장학금 등) ○ 체육특기자 선발 및 진출입 ○ 학교운동부 지원 사업(문체부)	농구, 사격, 육상, 씨름, 펜싱, 레슬링, 배드민턴, 산악, 근대 3(5)종, 승마, 철인 3종, 소프트볼, 세팍타크로
장학사	조신희 (代전상희)	○ 전국소년체육대회 참가 지원 ○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 학교운동부지도자 관리(성인지 예산 포함) ○ 학교운동부 기숙사 관리 ○ 학교체육 진흥 조치 점검(컨설팅 및 성과보고회) ○ 학교체육 활성화 방안 추진 우수학교 ○ 학교체육 진흥 추진기획팀 운영 ○ 우수선수 지도실적 평정대회	야구, 핸드볼, 탁구, 태권도, 유도, 볼링, 요트, 조정, 카누, 합기도, 댄스스포츠 수상스키·웨이크보드
장학사	권봉국 (代조태준)	○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지원(통합사업운영비, 각종 대회 포함) ○ 중학교 학교스포츠클럽 스포츠강사 지원 ○ 지역형스포츠클럽 운영 지원 ○ 학교스포츠클럽 공모사업 ○ 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 ○ 경상남도체육회 생활체육 관련 업무 ○ 신나는 주말체육학교, 공공지정 스포츠클럽 ○ 전국생활체육대축전 개최 지원	축구, 수영, 소프트테니스, 양궁, 골프, 체조(리듬), 사이클, 럭비, 당구, 바둑, 에어로빅·힙합, 기타
장학사	조태준 (代권봉국)	○ 경남초중학생종합체육대회 ○ 전국동계체육대회 참가 지원 ○ 초등생존수영교육 지원 ○ 학생건강체력평가(PAPS) 및 건강체력교실 운영 지원 ○ 초등(특수)스포츠강사 지원 ○ 교원 체육수업 지도 역량 강화 맞춤형 연수 ○ 학교체육연구대회(경남, 전국) ○ 스포츠문화체험 ○ 학교체육 표창 업무 ○ 국정과제 업무, 시도 평가, 특교 사업 결과	배구, 검도, 하키, 복싱, 롤러, 테니스, 역도, 이스포츠, 우슈, 스쿼시, 동계종목
행정8급	김하빈 (代이민재)	○ 교복 구입비 및 학교주관구매 지원 ○ 체육복 구입비 지원 ○ 학교운동부지도자 예산 및 인건비 지급 ○ 체육단체 민간보조금 지원사업 ○ 각종 체육대회 예산 지원(전국(동계)체육대회, 초중종합체육대회) ○ 부서장 성과계약 및 BSC 성과관리	
행정8급	이민재 (代김하빈)	○ 학교체육시설 예산편성 및 지원 ○ 학교체육시설(운동장) 개방 ○ 경남체육고등학교 예산 지원 ○ 초등(특수)스포츠강사 인건비 지급 ○ 학교운동부 기숙사 설립 및 운영 예산 지원 ○ 체육특기자 선발위원회 및 전입학 ○ 각종 체육대회 예산 지원(전국소년체육대회, 학교스포츠클럽대회) ○ 담당 예산업무 지원 및 예·결산 취합 ○ 담당 자료 취합(여비 포함)	

■ 2026년도 주요 대회 개최 계획

사 업 명	시기	장소
• 제107회 전국동계체육대회	2.25.(수)~28.(금) (4일간)	강원도
• 제65회 경상남도민체육대회	4.17.(금)~20.(월) (4일간)	함안군 창녕군
• 2026 전국생활체육대축전	4.23.(목)~26.(일) (4일간)	도내 일원 (주 개최지: 김해)
• 제55회 전국소년체육대회	5.23.(토)~26.(화) (4일간)	부산광역시
• 제20회 교육감배 학교스포츠클럽 대회	9.4.(금)~6.(일) (3일간)	도내 일원
• 제107회 전국체육대회	10.16.(금)~22.(목) (7일간)	제주특별자치도
• 2026년 경남초중학생종합체육대회	11.6.(금)~7.(토) (2일간)	진주시
• 제19회 전국학교스포츠클럽 축전	10~12월 중	전국